

職業訓練을 통한 出所者의 社會再適應에 관한 研究

魚允培*

I. 序論

1. 問題의 提起와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範圍와 限界

3. 研究方法

II. 受刑者를 위한 職業訓練의 狀況

1. 矯正事業에 있어서 職業訓練의 目標

2. 우리나라 受刑者職業訓練의 內容

1) 職業訓練의 基本目標

2) 職業訓練의 基本方向

3) 職業訓練의 種類

4) 企業體에 依한 職業訓練의 內容

5) 社會復歸를 위한 教化教育과 職業訓練

6) 職業訓練의 效果에 관한 實態調查結果

7) 評價

III. 職業訓練의 效果提高를 위한 行動修正

理論의 導入과 活用

1. 序論

2. 肯定의 強化

3. 處罰과 否定의 強化

4. 消滅

5. 強化스케줄

IV. 受刑者의 社會統合을 위한 地域社會內矯正事業

1. 序論

2.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基本概念

3.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種類

1) 中間處遇所(Halfway House)

2) 外部通勤制(Work-Release Program)와 外部通學制(Study-Release Program)

3) 기타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種類

4. 우리나라의 現況

1) 更生保護事業의 沿革

2) 更生保護의 目的과 對象

3) 更生保護의 種類

4) 更生保護事業의 組織

5) 保護節次와 實績

6) 問題點

7) 기타 民間에 의한 更生保護活動

V. 結論 및 提議

1. 本研究의 要約과 結論

2. 受刑者職業訓練의 效果性提高를 위한 몇 가지 提議

I. 序論

1. 問題의 提起와 研究의 目的

각 사회마다 당면하는 공통적 問題 중의 하나는 犯法과 再犯의豫防과 防止에 있다. 현대

* 文理大 社會事業學科 教授

* 이研究는 峴山社會福祉事業財團의 研究費支援으로 實施되었으며 調查研究過程에 있어서 本校大學院 社會事業專攻 趙徹君의 參與와 寄與가 있었음.

사회에 있어서 이에 對한 刑事政策의 方向은 과거의 應報思想이나 일벌백계의 嚴罰主義 또는 流刑, 追放 등과는 달리 教育刑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趨勢다. 우리나라 行刑法 第1條에서 명시하듯 행형의 목적은 懲役刑, 禁錮刑 및 勞役場留置와 拘留刑을 받은 자와 같은 受刑者를 교도소에서 矯正·敎化하여 수형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갖추게 하며 그들에게 수형기간 중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出監과 더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再活과 社會復歸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教育刑主義의 成敗與否는 수형자들에게 실시하는 精神敎育과 職業技術訓練의 효과성여부에 달렸다고 하겠다. 최근 발표한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1975. 1~1979.

4) 職業敎育을 통해 각종 技能士資格을 獲得하고 出所한 受刑者 9,156名에 대한 재범조사 결과, 이 중 16.2%인 1,481명 만이 再犯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수형자의 재범율 46%에 비해

<表 1>

支援職業訓練就業現況*

(77. 9. 1~79. 7. 31)

支援業體	期 別	職 種	修了	訓練中 人員	假釋放 假退院	入社	未入社	在社	其 他
合 計		15職種	1,217	404	1,033	726	283	348	1
矯導所		10個	918	366	852	636	216	323	1
現代重工業	小計		484	98	444	228	216	30	1
	1期	電氣熔接·製罐·配管	221		217	206	11	15	1
	2期	電氣熔接·建築木工·製罐	263		227	22	205	15	
大宇重工業	小計		98						
	1期	電氣熔接·旋盤·다듬질	258	128	235	235		137	
	2期	"	130		107	107		53	
東亞建設	小計		128						
	1期	電氣熔接·旋盤·다듬질	128						
	2期	"	128						
忠南紡績	小計		78	40	75	75		59	
	1期	重機運轉	40		40	40		26	
	2期	"	38		35	35		32	
大田交通	小計		40						
	1期	建築木工·組織·美匠	98	80	98	98		97	
	2期	"	39		39	39		38	
	3期	"	59		59	59		59	
			80						
	1期	自動車整備	20						
少年院計		5個職種	299	38	181	90	67	25	
現代重工業		電氣熔接·製罐·配管	139		136	69	67	4	
鮮京合纖		織機調整	60	18	21	21			21
三都物產		花卉栽培	100	20	24				

* 法務部 職業訓練課 資料

1/3정도에 그쳤다고 집계되고 있다.¹⁾ 그러나 한편 金箕斗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교도소의 過密化와 재소자에 대한 기술훈련에 所要되는 시설의 老朽나 專門要員의 不足現象으로 재소자의 절대다수가 기술교육을 받을 수 없는 實情에 있음이 指摘되고 있다.²⁾

따라서 과부족한 교도소내 훈련시설의 擴充과 전문요원의 充員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내교정사업”(the community-based correc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 즉 교도소 외부의 官民資源을 교정목적에 체계적으로 動員하여 교도소내에서의 제한적 교정효과를 보다 實効性있게 만들고자 하는 개념으로써 “외부통근제(work release)”나 民間企業體에 의한 支援職業訓練(社內職業訓練) 등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과 같은 지역사회내교정사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矯導所外部施設과 人的資源을 1977년 이래 수형자들의 再活과 社會復歸를 위한 직업기술훈련 목적에 동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

Daniel Glaser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재범율과 출감후 就業과는 逆比例의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出監後 즉시 취업이 되어 定着이 빨리 되면 될 수록 再犯率은 떨어지는 반면, 그 반대로 출감후 失業期間이 길어지면, 그만큼 再犯率은 높아지고 있음을 그의 연구에서 보여 주고 있다.⁵⁾

또 學者들의 연구에 의하면 出所後 60~90日 사이에 再犯하는 數가 가장 많다는 統計가 있기 때문에 이 3個月동안을 “累犯孵卵期間”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期間을 “出所者의 社會復歸成功與否에 있어 決定的인 時期(the crucial period of his return to the community)”⁶⁾로서 간주하고 있다.

이런 點에서 矯導作業을 위한 矯導所內의 職業訓練이 在所者의 再活과 社會復歸를 돋는 機能을 遂行할 수 있기 위해서는 出所後, 그들이 受刑期間中, 익힌 業種이나 技術分野에 즉시 就業될 수 있도록 職業輔導事業을 同時に 추진해야 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表:

1) 1980년 5월 9일자 中央日報를 볼것

2) 金箕斗,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새로운 방향”(1979), 朝鮮日報, 1979年 10月 24日字를 참고로 할것.

3) 이에 관한 참고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John Ortiz Smykla, *Community-Based Correc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M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Frederick A. Hussey and David E. Duffee, *Probation, Parole, and Community Field Services: Polic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0); David Duffee, *Correctional Management: Change and Control in Correctional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0) 등을 참고로 할 것

4) 姜求眞, “受刑者職業訓練制度의 實態에 관한 研究(I),” 서울대학교 法學, 제20권 2호(통권 43호, 1980.5), p. 328에서 再引用하였음.

5) Daniel Glaser, *Adult Crime and Social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2), p. 104, 그리고 그의 저서 *The Effectiveness of a Prison and Parole System* (Indianapolis, Ind.: Bobbs-Merrill, 1964), pp. 504-13을 볼 것.

6) 金箕斗, “更生保護의 理念과 實踐”, 矯正, 1968. 5~6月號, p. 4, 그리고 偵鎖探, 刑事政策(II)(서울:法文社, 1974), p. 306을 볼 것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企業體들에 의한 受刑者들의 職業技術訓練과 出所後 就業을 保障하는 “地域社會內矯正事業”的 方法이 보다 實效性을 거둘 수 있다는 結論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Glaser 教授가 적절히 지적하듯, 궁극적인 問題는 出所後 受刑者들을 地域社會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社會復歸를 위한 職業技術訓練의 效果性與否가 決定된다라고 하겠다.⁷⁾

특히 莫大한 施設과 要員을 動員하여 民間企業에서 受刑者들의 再活과 社會復歸를 위하여 職業技術訓練을 實施한 뒤, 그들을 제대로 受容하여 그 職場에서 새로운 社會生活의 規範과 生活秩序를 이힐 수 있는 契機를 提供해 주지 못한다면 再犯防止에는 效果는 있었을지 몰라도 受刑者의 社會復歸라는 궁극적 목표를 達成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企業體의 立場에서 볼 때에도 큰 損失이 아닐 수 없다.

本研究를 위한 實態調查結果에서 볼 때 就業된 受刑者들이 職業訓練을 실시해 준 그 職場을 離職한 率은 <表 2>에서 보듯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2> 受刑者들의 就業後 離職率

	*入社者總數(A) (1977. 9. 1) (~79. 7. 31)	**在社者數(B)		離職率 A-B/A (%)
		1979年 8月 現在	1981年 9月 現在	
現代重工業	228	18		92
大宇重工業	235		23	90
東亞建設	75		29	61
忠南紡績	98	16		84

*入社者數는 <表 1>의 資料를 볼 것

**在社者數는 實態調查에 의해 밝혀진 것임

<表 2>에서 보듯 受刑者들의 社會復歸의 成敗與否를 再犯與否에서가 아니라 職場生活에의 定着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問題點을 提起해 준다고 하겠다. 職場生活의 定着은 受刑者들이 社會生活規範이나 職場規律 등 一般市民들이 遵守하는 生活秩序를 받아들이면서 自己의 行為規範으로 內在化하고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職業訓練을 통한 앞으로의 矯正事業의 課題는 이 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職業訓練을 단순한 技能의 傳授나 資格證取得을 위한 機械的 過程으로만 取扱할 것이 아니라 訓練過程中, 그들의 意識과 態度에 변화를 줄 수 있는 素養教育, 成功的인 삶을 살고 있는 先輩技能出所者들과의 접촉, 또는 社會事業家, 社會人士들과의 접촉, 상담 등 幅闊은 地域社會서비스의 提供을 矯正事業의 重要한 要素로서 動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이미 地域社會가 主體가 되어 各種 社會福祉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이 自由로이 쉽게 接近하여 活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7) Daniel Glaser, *Adult Crime and Social Policy*, op.cit., p.106.

就業된 受刑者들의 離職率이 높은 主要 理由 中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社會的 씨비스의 提供이 職業訓練過程期間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就業前後로 해서 缺如되었기 때문이며 特히 그들을 就業시키고 있는 企業體內에서 그들의 職場生活에의 定着과 適應을 支援해 줄 수 있는 社會事業家와 같은 專門要員이 없는 데서 受刑者들이 그들의 內的 갈등이나, 職場生活에의 不適應問題 등을 相談할만한 기회를 갖지 못한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⁸⁾ 그렇다고, 出所者들의 前과 다름없는 無變化된 思考나 態度의 責任性을 가볍게 取扱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態度變化가 바로 地域社會와 統合이 되고 活性化될 때, 矯正事業의 目標가 達成된다는 點에서 現在까지 受刑者들의 변화만을 강조해온 교도소내의 從來교정사업만으로는 不充分하다는 점을 強調하는 데 不過하다.

故로, 1967年 美大統領法律執行과 司法行政委員會(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의 矯正事業部門特別調查班(Task Force on Corrections)은 아래와 같은 矯正事業課題를 同 委員會報告書에서 言及하고 있다.

"The task of corrections therefore includes building or rebuilding solid ties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community, integrating or reintegrating the offender into community life-restoring family ties, obtaining employment and education, securing in the larger sense a place for the offender in the routine functioning of society. This requires not only efforts toward changing the individual offender, which has been the almost exclusive focus of rehabilitation, but also the mobilization and change of the community and its institutions."⁹⁾

以上과 같은 背景을 基礎로 다음 세 가지를 本研究의 目的으로 設定하였다.

첫째, 現行 矯導所內外의 職業訓練實施過程의 問題點 규명과 그 改善策의 모색

둘째, 職業訓練을 受刑者들의 원만한 社會復歸와 態度變化의 道具로서 機能을 強化시켜 줄 수 있는 方法의 理論的 根據의 提示

세째, 受刑者들의 職業訓練을 實效性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社會復歸를 支援해 주도록 創案된 "地域社會內矯正事業"(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의 概念이나 方法 中 우리 現實與件에서 採擇可能한 分野의 모색 등, 세가지 側面에 研究의 焦點을 두어 效果的인 矯正事業을 為한 職業訓練制度의 強化提示에 本 研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2. 研究의 範圍와 限界

本 研究의 主目的이 受刑者들의 社會復歸를 위한 職業訓練의 實效性있는 活用方案의 모색

8) Martin Davies, *Prisoners of Society: Attitudes and After-c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은 이런 側面에서 좋은 事例를 提示해 주고 있다. 그리고, H.G. Moeller, "Community-Based Correctional Services", in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4), Chapter 24, p. 902를 볼 것

9) H.G. Moeller의 上記論文에서 引用된 것을 再引用하였음. pp. 901~902를 볼 것.

에 있기 때문에 研究의 範圍는 前節의 目的에서 言及한 세 가지 側面에만 局限되고 있다.

即 職業訓練이란 制限된 研究의 範圍內에서도 研究의 對象은 다음 範圍에 局限되었다.

(1) 矯導所內에서의 職業訓練의 內容과 實施方法을 調査하기 위하여 仁川矯導所를 研究의 主된 對象으로 選定하였다.

(2) 企業體들에 의한 受刑者들의 職業訓練의 實態는 現代重工業(株), 大宇重工業(株), 東亞建設(株), 忠南紡績(株)에 限定되고 있다.

(3) 出所者들의 社會復歸를 支援하는 目的으로 設立된 社會團體中 서울特別市에 位置하고 있는 3個 團體를 對象으로 調査하여 그 現況을 파악하였고, 出所者들의 社會適應과 保護事業을 個人의 立場에서 實施하고 있는 6名의 民間資源人士(voluntary resource persons)들과의 面接을 통하여 所謂 말하는 “地域社會內矯正事業”的 導入可能性與否 또는 方向 등을 決定하는 데 參考로 하였다.

(4) 矯導所內外의 職業訓練의 問題點이나 職業訓練이 受刑者들에게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는 調査當時 訓練을 받고 있던 20名의 在所者와 出所者 215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面接이나 設問調查의 結果에 立脚하고 있다.

(5) 보다 效果的인 職業訓練의 實施를 위하여 本 研究에서 提示하고 있는 行動修正理論이나, 地域社會內矯正事業方法의 實效性與否는 實驗群(experiment group)을 선정하여 調査者의 統制下에 實施한 結果에 의한 것이 아니며, 行動修正理論의 경우에는 他研究 分野에서 實施하여 얻은 結論에 미루어 보아 受刑者들에게도 採用可能할 것이라는 推定에 立脚하고 있다¹⁰⁾ 또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概念이나 方法 및 그 效果에 관해서는 美國의 事例나 文獻研究에 全的으로 依存하고 있다.

3. 研究方法

(1) 職業訓練이 受刑者들의 社會復歸를 위한 道具(a tool or an instrument)로서 現在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1981년 8월에서 9월까지 한 달기간 동안 仁川矯導所를 4차례 방문하여 職業訓練을 擔當하고 있는 관리자 및 교사들과 面談을 하였고 이미 앞에서 言及한 대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20명의 受刑者들과 集團面談(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職業訓練이 수행하는 機能上의 한계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의 직업훈련에 관한 詳細한 統計나 機械裝備에 관한 資料를 保安上 外部人們에게 공개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具體的인 狀況把握은 거의 不可能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面談을 통하여 知悉한 정보

10) Michael A. Milan and John M. McKee, "Behavior Modific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in Corrections", in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op. cit., Chapter 20, pp. 745-76를 참고로 할 것.

나 피면담자들이 提示하는 문제점들을 綜合하여, 現行 교도소내 職業訓練의 그 實施過程에서 가지는 問題로서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

(2) 이번 研究는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實驗群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이 수형자들의 態度變化나 출소후 職場 및 社會生活適應에 얼마나 寄與하는지를 把握하기 위하여 調查者の 統制下에 특정한 變數를 中心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現行 職業訓練의 效果를 알아보는 方法으로 出所者들을 탐문하여 그들이 在所時에 직업훈련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나 態度는 어떠했으며 혹은 출소후 그들에게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設問面接方法을 택하였다. 면접한 215名 중 在所時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58명이었고 나머지 157명은 재소시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出所後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에 就業이나 社會生活適應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比較할 수가 있었다. (215명 중에서 25명의 應答은 우편 설문지 방법으로 얻은 것임)

(3) “地域社會內矯正事業”的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는 民間事業이나 國가기관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사업을 現在 施行하고 있는가를 把握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4개의 企業體와 3개의 團體를 訪問하여 실무자들과 面談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本研究에서 활용한 統計資料나 기타 정보를入手하였다. 이 외에 個人資格으로 出所者들의 사회적응을 돋고 있는 6명의 社會人士를 방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見解를 수합하였다.

(4) 職業訓練에 관한 政府의 시책을 알아 보기 위하여 法務部 矯正局에서 작성한 수형자직업훈련계획이나 기타 統計資料 및 定期刊行物을 조사·분석하였다.

(5) 矯正行政一般 및 교정사업의 하나로서 직업훈련에 관한 國內外 문헌이나 論文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本研究의 目的에 활용하였다.

(6) 끝으로 出所者들에게 실시한 면접용 設問紙는 4개 분야에 걸쳐 43개 問項으로 작성하였다. 즉 ① 個人的 여전이나 환경에 관하여 7개 문항 ② 職業訓練에 관하여 8개 문항 ③ 출소자들이 느끼는 사회인식에 대하여 11개 문항 ④ 취업문제에 관하여 17개로 作成하였다.

II. 受刑者를 위한 職業訓練의 現況

1. 矯正事業에 있어서 職業訓練의 目標

前章에서 言及하였듯이 現代社會에 있어서 矯正의 目的是 受刑者들의 教化, 改善 또는 再活에 두고 있으나 最近에는 矯正事業의 內容을 社會復歸 또는 社會에의 再統合(reintegration)에 目標를 두고 있다.¹¹⁾ 이 目標에 對한 手段體系의 하나로서 現代 矯正은 이미 言及한 대

11) Stuart Adams, "Measurement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Correction," in Daniel Glaser (ed.), *Handbook*

로 精神教育과 더불어, 職業訓練을 重視하고 있다. 受刑者들에 대한 矯導作業은 오래전부터 實施되어 왔으나 그目的이 다분히 應懲의이었거나 受刑者들의 勞動力を 오로지 生產手段으로만 活用하였던 것이一般的慣行이었다.

그러나 教育刑主義의 대두와 더불어 職業訓練은 受刑者들의 再犯防止, 社會復歸, 社會統合 등 社會的目標를 더욱 重視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受刑者에 對한 職業訓練의 目的은 “受刑者에게 適性에 맞는 職業訓練을 實施하여 矯導作業에 活用할 수 있는 技能工을 養成하는 한편, 國家技能人력을 開發하고, 出所者 生業에 必要한 技術을 習得케 하여 再犯을 防止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¹²⁾ 즉 受刑者에 對한 職業訓練의 一次的 目標는 矯導作業에 필요한 技能을 배워주고, 二次的으로 再犯防止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換言하면 先進國에서와 같이 職業訓練을 以上과 같은 目標보다는 즉 受刑者들의 健全한 社會復歸와 社會生活의 定着이라는 側面에서 그 内容과 方法을 接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料된다. 勿論 受刑者들이 出所後, 再犯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社會復歸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져 社會生活에 定着하고 있다는 推論도 可能하나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出所後 再犯은 하지 않고 있으나, 職場生活이나 社會生活的不安定한 狀態는 그들의 職場離脫이나 원만한 家族關係維持의 困難 등 諸側面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職業訓練을 受刑者들이 市民精神이나 社會生活의 一般的規範을 習得하고 內在化할 수 있는 過程으로 그 内容과 方法을 編成하는 것이 要望된다. 即 職業訓練이 受刑者들의 態度變化의 變數로서 作用하도록 計劃하고, 實施한다면 그들의 動機에 상당한 變化를 가져올 수 있고, 그 結果로 그들이 원만한 社會復歸 또는 社會生活에의 적응이 可能해지고, 또 그 結果로 再犯을 하지 않게 되다는 矯正哲學이 要請된다.¹³⁾

要컨대, 職業訓練의 基本目標를 社會復歸 또는 社會生活에의 適應에 두면서 職業訓練을 效果있게 計劃하고 實施하는 研究가 필요하다. 우선 現行受刑者職業訓練의 内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受刑者職業訓練의 内容

矯導行政 一般에 관한 것이거나 受刑者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것들은 현재까지 矯導所라는 閉鎖的인 기관내에서의 過程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實態調查나 學術的인 研究가 외부기관(예를들면 대학연구소)이나 專門家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進行되어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of Criminology, op. cit., Chapter 29, p. 1022.

12) 法務部, 1981年度 受刑者職業訓練計劃, p. 3.

13) H.G. Moeller, op. cit., p. 902.

以下에서는 主務官廳인 法務部에서 작성한 1981년도 및 82년도 “수형자직업훈련계획”안을 中心으로 현행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내용, 방침, 실시과정 등을 概括的으로나마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矯導所內外에서 수형자들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어떤 研究假說下에서 선발한 統制集團을 상대로 실시하여 전 과정에 걸친 實證的 研究를 어느 누구도 실시한 적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法務部에서 세운 受刑者職業訓練計劃이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은 직업훈련의 基本 目的이나 目標에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으며 實效性이 있는가를 객관적 인 데이타를 가지고 評價할 수 없다. 따라서以下の 現代 教育主義의 이념, 矯正行政의 현대적 추세, 先進國에서의 受刑者職業訓練의 内容 및 실시방법 또는 行動修正理論 및 본 연구의 현장 및 설문조사 등에 입각하여 정립할 수 있는 概念的 틀(conceptual framework) 안에서 우리나라의 受刑者職業訓練의 内容과 方法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1) 職業訓練의 基本目標

法務部의 직업훈련계획에 의하면 基本目標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크게 大別할 수 있다.

- ① 2급기능사 이상의 高級技術人力을 양성한다.
- ② 矯導作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도작업과 관련있는 職種의 技能工養成과 熟練工化한다.
- ③ 少年 및 過失犯 受刑者에 對한 직업훈련을 強化實施한다.
- ④ 보호감호자에 對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 職業訓練의 基本方向

① 직업훈련은 수형자의 適性에 맞게 實施한다. 즉 각 직종에 대한 適性에 맞는 수형자를 訓練對象者로 선정하고 습득한 기능에 상응한 資格 또는 免許取得을 目標로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여 技能資格 取得率을 향상시킨다.

② 殘刑期가 3년 以上인 中長期受刑者は 가급적 矯導作業과 관련있는 職種의 훈련을 실시하고 수료후 同一業種에 취업토록하고 技能을 계속 연마케 한다.

③ 잔형기가 3년 미만의 短期受刑者를 선정하여 가급적 교도작업과 관계없는 職種의 技能資格을 取得케 하여 社會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한다.

④ 職業訓練과 矯導作業을 連繫化한다. 특히 2級技能士資格을 取得할 경우 關聯職種 矯導作業에 2年以上 就業시켜 技能을 研磨한 후 再訓練받도록 하고, 技能資格을 取得하지 못한 경우는 關聯職種 矯導作業에 就業시켜 技能을 研磨시켜 技能을 習得한 후 向上訓練 또는 再訓練을 받도록 한다.

⑤ 소년수형자에게는 연차적으로 교도작업을縮小하는 반면 公共 및 一般職業訓練을 강화한다. 또한 過失犯의 경우 再犯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 운전에 대한 훈련을 강화한다.

⑥ 訓練의開始 및修了日字를統一하여訓練業務를能率的으로수행하는한편技能檢定受檢에效果的으로對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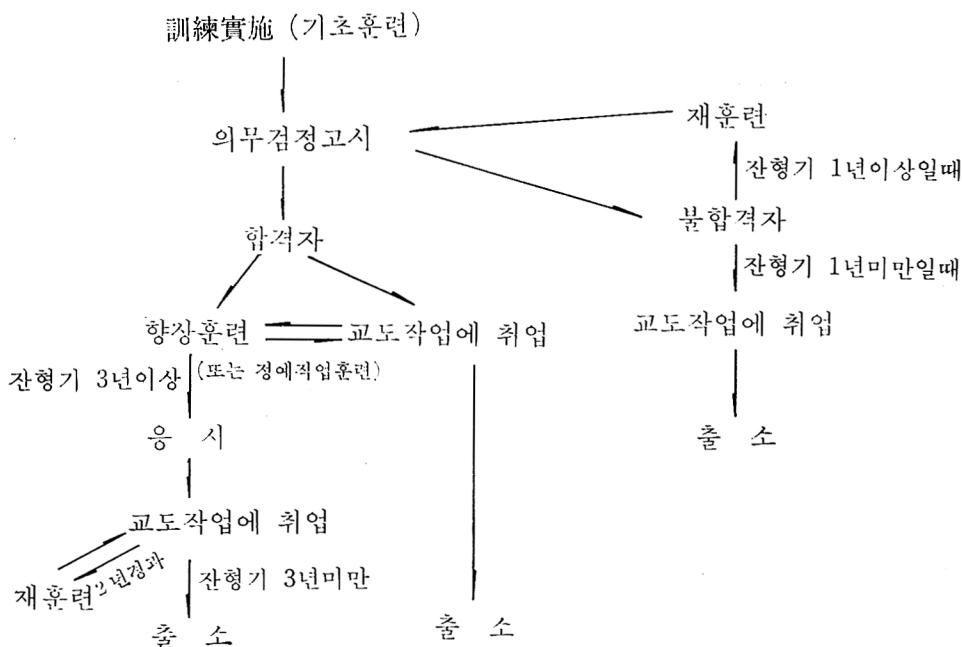
3) 職業訓練의 종류

(1) 職業訓練의 實施過程

직업훈련을통한技能士의 훈련과정으로서는基礎訓練, 向上訓練, 轉職訓練 및 再訓練 등이 있다. (직업훈련법 第6條)矯導所內 직업훈련도 직업훈련법에서 나열한 위의 훈련과정을 통해技能受刑者를養成하고 있으며, 동시에 앞서 직업훈련의基本方向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교도작업과의連繫性下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그림으로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1>

職業訓練의 實施過程



여기서 提示되는 기초훈련, 향상훈련 및 재훈련의內容을 각각 살펴보면,

① 基礎訓練；기능사보資格取得을 목표로 직업훈련基本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소가 설치된 교도소拘置所 및 保護監護所 총 31개소에서 組績, 美匠, 木工, 印刷 등의 23개 직종에 대해 각기 3개월에서 1년의 기간에 걸쳐 직업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② 向上訓練；2급이상의 기능사자격취득을 목표로 하여 公共職業訓練所가 설치된 矯導所

및 拘置所에서 활판인쇄, 양복, 용접 등의 18개 종목의 직업훈련을 6개월에서 1년의 과정으로 배우는 훈련과정이다. 특히 이 과정의 대상자는 基礎訓練을 修了하였거나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③ 再訓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基礎訓練을 받고 技能士補이상의 資格證을 가진자에게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이다. 특히 2級技能士 資格取得 所持者로서 교도작업에 2년 이상 취업한 자의 경우는 1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는 훈련과정이다.

以上의 訓練過程이 殘刑期에 따라 그리고 자격시험의 결과에 따라 교도작업과 함께 어떻게 실시되어지는가는 <圖表1>에서 이미 예시하였다. 즉 기초훈련과정을 거쳐 기능사보자격시험에서 불합격 받았을 때 受刑者의 殘刑期가 1년 以上일 때 基礎訓練過程을 재차 教育받아 技能士補資格試驗에 재차 응시하게 되나 잔형기가 1년 이하일 때는 교도작업에 취업케 된다. 또한 기능사보 자격이나 이에 相應한 자격이 있는 者들이 向上訓練過程을 거쳐 2급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時, 殘刑期가 3년이이상일 때는 교도작업에 2년이상 취업한 뒤 재훈련을 통해 1급기능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殘刑期가 3년 미만일 때는 교도작업에 就業케 한다.

(2) 職業訓練의 種類]

직업훈련의 종류는 國家地方自治團體가 또는 職業訓練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公共職業訓練과 民間企業의 支援을 받아 실시되어지는 직업훈련 그리고 위의 2종류의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受刑者들에게 행해지는 一般職業訓練 3가지로 大別된다. 이 가운데 公共職業訓練은 精銳職業訓練과 나머지 基礎訓練, 向上訓練, 再訓練의 課程으로 구성되어 진다.

① 精銳職業訓練——공공직업훈련의 하나로서 永登浦, 清州 및 金海교도소에 併設된 綜合精銳職業訓練所에서 2級技能士 資格取得을 目標로 실시하는 訓練이다. 訓練對象者は 各種의 技能士補 資格所持者 또는 中學校卒業程度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자로서 行刑成績이 良好한 者를 全國 교도소에서 差出 集禁하여 실시하거나 精銳職業訓練을 받고 2級技能士 資格을 取得하지 못한 자 가운데 再訓練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실시한다. 그리고 職業訓練을 마치게 되거나 재훈련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래 소속되었던 교도소로 還所하게 되는 동시에 同一職種에 就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精銳職業訓練을 제외한 公共職業訓練——앞에서 言及한 대로 公共職業訓練은 앞서 설명한 基礎職業訓練課程, 向上職業訓練課程 및 再訓練課程으로 되어 있다. 故로 公共職業訓練의目標는 기능사보 자격과 2급이상의 기능사 자격취득에 두고 있다. 이 訓練의 職種과 人員 그리고 訓練期間은 <表3> 및 <表4>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③ 一般職業訓練——30個의 全國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각종 면허의 취득을 목표로 自動車運轉, 理容, 美容 등의 3個 직종을 3개월에서 6개월과정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이 훈련의 對象은 公共職業訓練 및 民間企業體에 의한 직업훈련에 훈련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者

들 중에서 適性에 적합한 자로 하며 當該 所長이 선정하게 된다.

④ 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一般社會의 企業體에서 訓練에 소요되는 施設, 裝備 및 技術指導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직업훈련이다. 이 훈련은 그 目標를 企業體側에서 실시하거나 支援이 가능한 직종에 따라 각종 기능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訓練의 對象은 行刑成績이 良好하고 훈련수료와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면 假釋放이 가능한 자로 하며 全國 矯導所에서 差出 集禁하여 訓練을 實施한다.

(3) 課程別 職業訓練對象人員計劃現況

法務部에서樹立한 受刑者職業訓練計劃에 의하면 1982년도 訓練計劃人員은 課程別로 다음 <表 3>과 같다. 訓練計劃人員數만 보더라도 全體受刑者數에 比하여 그 比率이 极히 적은 數值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교도소내외의 훈련시설이나 要員의 絶對不足 現象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¹⁴⁾

<表 3> 職業訓練의 職種別 訓練人員

精銳職業訓練課程	8종	1,300名
基礎訓練課程	23종	3,925名
向上訓練課程	18종	1,150名
公共職業訓練小計		6,375名
民間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	4종	125名
一般職業訓練	3종	800名
計		7,300名

<表 4> 課程別 職業訓練의 種類

基 础 職業訓練課程	3月	조적, 미장, 도배, 조원	計 4
	6月	건축도장, 건축목공, 전기용접, 자동차사시, 활판인쇄, 봉제, 문선식자, 방직보전, 환면, 염색, 수면, 기편, 제화, 고무제품제조, 올셋	15
	1年	가구제작, 창호제작, R/TV, 농업기계	4

14) 姜求眞, *op. cit.*, pp. 313~314. 에서는 1976. 12. 17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發展政策研究課程 제10회 國家政策세미나 “矯正行政의 實態와 進路”를 참조하여 1976년 현재 29개의 교도소, 3개의 구치소, 11개의 소년원, 2개의 소년감별소에 약 60,000여명의 기관 및 미결재소자가 있으며 이를 1년기간을 단위로 하여 볼때, 연간 약 120,000명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출감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사이에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받고 기능사등 자격을 취득한 재소자는 총 22,413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수치는 1년평균 약 2,802名에 해당되는 수이다.

向 上 職業訓練課程	6月	활판인쇄, 양복봉제, 문선식자, 전축목공, 건축도장, 전기용접, 선반, 다크질, 자동차샤시, 수평, 기편, 미장, 조적, 제화, 방적기, 보전	16
	1年	가구제작, R/TV	2
精 銳 職業訓練課程	6月	건축목공, 조적, 미장, 선반, 전기용접, 타일, 건축도장	7
	1年	창호제작	1
民間企業體에 의한職業訓練課程	6月	전기용접, 선반, 다크질,	3
	1年	자동차정비	1
一 般 職業訓練課程	3月	자동차운전	1
	6月	이용, 미용	2

4) 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의 內容

앞에서는 교도소내외에서 실시되는 職業訓練의 실시방법, 내용 등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이들 여러 종류의 職業訓練 가운데서 民間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은 矯正의 效果 側面에서나 民間 資源의 活用側面에 있어 그리고 職業訓練의 實施方法에 있어서의 多樣함 등을 고려할 때 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의 重要性은 다음의 세 가지점에서 強調될 수 있다.

첫째, 在所者(受刑者)의 社會와의 接觸이 용이하다. 在所者の 社會와의 接觸은 이들의 更生이나 社會適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¹⁵⁾ 故로 先進國에서는 교정의 방향을 보다 지역사회에 그 중점을 둔 “지역사회내교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달되어 지는 技術의 수준이나 職種에 있어 다른 종류의 職業訓練들 보다 현재 社會에서 活用되고 있는 그리고 必要로 하고 있는 직종과 수준에서 訓練이 실시되어 진다. 現在 다른 職業訓練에서 교육되어지는 職種에서는 상당수가 落後된 기술로서 기술전달후 실제 사회에 나온 뒤 이를 生活手段이나 社會에 適應하는 道具로서의 技能을 못하는 實情에¹⁶⁾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두드러지는 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의 長點이다.

세째, 企業體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소기의 資格을 獲得하면 가석방과 동시에 훈련을 實施한 企業體에 즉각 就業될 수 있다. 이는 이미 指摘하였듯이 就業시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15) John Ortiz Smykla, *Community-Based Correc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op. cit., Chapter 3. p. 24.에서 인용한 1967년 President Johnson's Crime Commission의 요약보고에 따르면, '자신의 생활을 영위치 못하는 범죄자를 잡아 타인과 고립시키면 그의 좌절과 분노는 증대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은 없어지며 그는 더욱 위험해진다.'라 지적하면서 사회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다.

16) Gerald Adler, "Correctional (Prison) Psychiatry," in Harold L. Kaplan et. al. (editioners),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III (3rd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Co., 1980), Chapter 54. 2, p. 3083을 참조로 할 것

그만큼 社會適應이 빠르다는側面에서 무척 중요하다.¹⁷⁾ 또한 이것은 受刑者들이 出所時 혹은 職業訓練을 받을시 겪을 수 있는 心理的不安의 요인을 가석방과 職業安定이란側面에서 克服할 수 있으며, 이는 職業訓練에 임하는 受刑者들에게 훈련태도나 자세에 있어 다른 직종의 직업훈련보다 더욱 積極的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의 效果性이나 長點도 訓練을 받는 受刑者의 자발성이나 热意 외에도 이에 投資하고 教育시키는 企業側의 參與度나 그 热意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지는 것이라므로 企業體에 의한 직업훈련을 受刑者外에도 企業의 立場에서 살펴는 것은 바람직 하겠다.

이를 위해 受刑者職業訓練을 실시하거나 실시한 바 있는 4개의 企業體를 1979年 8月(현대 중공업·충남방적)과 1981年 9月(대우중공업·동아건설) 두 기간에 나누어 각각 訪問하여 관계자들과의 面談을 통하여 企業體에서의 訓練에 대해 살펴 보았다.

〈表 5〉 企業體에 의한 職業訓練의 内容

	동아건설	대우중공업	충남방적	현대중공업
훈련 실시	1978/1/20~1979/10	1978/3/5~현재	1978/8/1~1979/8	1977/9/1 ~1978/10/28
回期 및期間	6개월씩 4期中間까지	6개월씩 現在 7期	6개월씩 3期	6개월씩 3期
人員 (修了生기준)	每期 40名	每期 130名	1期 39名 2期 59名	1期 288名 2期 340名
職種	重機運轉	電氣熔接, 旅盤, 다 듬질	建築未工, 組績, 美 匠	電氣熔接, 製管, 配 管, 建築, 木工
人選基準	1次: 교도소에서 선발 2次: 면접을 통해서 초범자 가운데서 모범수이며 개전의 여지가 있고 범법동기가 生活苦인 者중 中學校 2학년 정도의 수준자에서 선발 특히 죄질을 고려 선발	1次: 교도소에서 행 형성적이 좋고 연 고지가 확실하며 재범 가능성성이 적은 자 선발 특히 2 범까지는 대상자에 포함시킴 2次: 재범자 제외 중 졸이상, 형기가 1년 이상 남은자, 죄질이 사기등 파렴치범 제외 자해 사고자, 문신있는 자 제외	1次: 교도소에서 선발 2次: 모범수로서 가족이 있으며 형기 가 1/3 이하가 남은 자 중에서 교육 받은 기술을 天職으로 삼는 조건을 수락한 자	

17) Daniel Glaser, *Adult Crime and Social Policy*, op. cit., p. 104.

	동 아 건 설	대 우 중 공 업	충 남 방 적	현 대 중 공 업
실 시 동 기	국가 시책에 따라 실시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
就 業 狀 況 (入 社)	훈련생의 95%~100%를 매기마다 취업	훈련생의 97%~100%를 매기취업시킴	100% 취업시킴	훈련생의 29%~95% 까지 매기취업
입사후 대우	입사 1년간은 봉급에 있어 일반인보다 적으나 1년후 같아짐	학력, 경력, 자격고려하여 대우하며 출소자 신분의 비밀보장해줌	일반사원과 동일하게 함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在職狀況	總期를 합하여 81년 9월 현재 29名 在職(社)	總期를 합하여 81년 9월 現在 23名 在職(社)	79年 8月 現在 16名 在職(社)	79年 8月 現在 18名 在職(社)
企業側에서 본 離職 이유	1. 出所者 자신의 파실 2. 적성에 맞지않아 3. 다른직장으로 이직(약 10%)	1. 직업훈련이나 입사동기가 가석방에 있음 2. 열등감 등 적응력 부족 3. 훈련이나 모든 생활이 교도소에 의해 강제로 진행됐기 때문 4. 회사측에서의 현경 5. 입사대상들의 연령이 어리고 어려운일 해보지 못했기 때문	1. 범죄근성 버리지 못했기 때문 2. 직장에서 희망갖지 못했기 때문	
훈련이나 입사후 사후대책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1~2회에 걸쳐 3박 4일로 연수교육(정신교육)을 실시하며 간혹 별도 교육함		
기타 훈련상의 問題點	犯罪者 個人으론 다른 훈련생과 화합되지 않고, 자학이나 열등감 속에서 외부의 통제꺼림 또한 낭비벽, 도벽, 나태성 등의 습성과 봉	학력이나 개인수준이 부족하여 훈련상에 평준화 어렵다. 또한 의욕도 없고 교도작업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편한 생활위해 훈련을 기	범죄자의 인간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술훈련이 되어지기 어렵다.	직업훈련에 대한 동기가 확실치 않은자를 선발하는 등 인선에 문제가 있다.

동 아 건 설	대 우 중 공 업	충 남 방 직	현 대 중 공 업
급에만 만족치 않는 경향 있다. 會社側에선 이들을 훈련이나 작업지시하는 것보다 감시하는데 더 신경쓰고 있다.	피하거나 제한된 생활속에서 익숙해져 할려는 태도없다. 특히 공구관리상의 문제들도 있다.		

직업훈련은 전문교사를 교도소내 훈련소에 파견하는 외에도 동아건설에서는 외부통근제(work release)를 처음으로 採擇・活用하여 직업훈련을 實施하는 등 직업훈련의 실시에 있어 多樣化를 폐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정에의 企業體의介入은 矯正方法의 다양화와 民間資源의動員, 矯導所의 社會에로의 開放化 등 行政的側面과 矯正道具로서 受刑者の 社會適應에 寄與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企業側에선 다음과 같은 훈련실시에 따른 問題點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훈련생의 수준이 일반 훈련생의 경우는 대개 一定하여 교육이 容易하나 受刑者들의 경우는 그 수준의 차가 다양하여 교육실시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訓練받는 受刑者の 부족이나 訓練上 보충할 사항이 있어 特講을 필요로 하지만 하루 8시간 외에는 訓練時間이 주어지지 않아 이의 실시가 용이치 않다.

세째, 受刑者が 訓練을 받는 過程에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는 잘못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에 대해懲戒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만약 이들에게 징계를 하였을 경우 징계후의 보복이나 이에 대한 不滿의 表示 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故로 受刑者들에 대한統制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沮害要因으로 작용케 된다.

5) 社會復歸를 위한 教化教育과 職業訓練

受刑者를 改善, 矯正, 更生 및 社會에의 再統合을 시키는 것이 矯正의 目標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目標를 達成하는 手段으로서 職業訓練 하나 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行刑法 1條에서도 技術教育을 통하여 社會에 復歸시키는 方法外에 수형자를 矯正教化하여 健全한 國民思想과 勤勞精神을 潤養케 하는 精神教育方法을 병행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성코자함을 표명하고 있다. 故로 이 두가지 접근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교정의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고 나아가 교정이 가지는 目標를 얼마나 달성하느냐가 좌우되어지는 것이다.

현재 교도소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矯正教化教育의 內容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8) 治刑協會, 韓國의 矯正行政(治刑協會, 1979), pp. 31~37.

- | | |
|------------|---------------------|
| ① 生活指導教育 | ② 새마을精神教育 |
| ③ 教科教育 | ④ 通信教育 |
| ⑤ 宗教教育 | ⑥ 情緒教育 |
| ⑦ 教養誌 | ⑧ 閱讀圖書 |
| ⑨ 篤志訪問委員制度 | ⑩ 少年團活動(금천·인천소년교도소) |

이 가운데서 먼저 學科教育을 살펴보면, 成人矯導所의 경우, 국민학교 3학년 과정까지 가르치는 公民班과 4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教養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년교도소의 경우 국민학교 4학년 과정까지의 公民班과 국민학교 전과정의 初等班 그리고 적격자 가운데서 希望者에게 實施하는 中學校課程의 中等班과 高等學校課程의 高等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과교육은 矯導作業과 대치되는 것¹⁹⁾으로써 일종의 所內特權이다. 왜냐하면 교도작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所內禁止구칙중 하나인 필기구의 사용등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⁰⁾ 故로 이 學科教育을 교도작업의 기피나 다른 목적 즉 교정이나 교육의 목적보다 소내생활을 편하게 그리고 적당히 보내려는 의도를 갖고 이를 한 方便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刑이 確定된 후 주어지는 새마을精神教育은 새마을研修課程教育으로 勸勉, 自助, 協同의 精神을 통해 在所者의 更生自立基盤을造成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에 제시된 시간에 맞춰 7일 동안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7일 동안의 짧은 時間으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교육장의 대우나 처우가 교도소보다는 훨씬 좋아서 재소자들이 대부분 이 때를 교육기간으로 보기 보다는 교도생활 가운데 휴식시간으로 여기고 있어서 教育效果는 크게 期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¹⁾

〈表 6〉 새마을研修課程教育內容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새마을운동		3	미국의 개척정신		2
대통령 어록경청		1	이스라엘전국정신		2
준법정신과 법률생활 騞致		4	위인전		2
새마을성공사례		5	대만 청소년의 현실		2
윤리교육		5	가정과 가족관계		2
우리가 잘 사는길		2	인간과 사회		2
전전 가요		3	정부정책과 경제발전		2
자원과 물자절약		2	분임 토의		4

資料：교정·치형협회 1979. 2. p. 17

계

43

19) 行刑法 施行令 112條

20) 累進處遇法 63條에 따라 3급이상자에게 해당된다.

21) 직업훈련에 대한 면접설문조사과정에서 비록 설문항목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면접과정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새마을 교육기간을 휴식으로 여기는 태도를 나타냈고, 이들에 의하면 대개의 재소자 역시 이러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出所前教育 혹은 釋放前教育은 出所前 社會進出을 爲한 準備教育으로서 出所後의 生活에 必要한 留意事項과 社會事情, 更生保護事業 等을 教育하여 社會復歸에 기여코자 하는 目的으로 實施되고 있다. 그러나 實제로는 강사(課長級)가 연설하는 형식으로 운용되어 그 내용도 출소후 申告教育程度와 法적인 일반생활문제정도로써 社會復歸後에 따르는 葛藤이나 摩擦, 가정과의 관계 등의 社會心理的인 側面을 적절히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生活指導教育은 新入時 교도소내 生活과 規則에 대한 교육과 在所時 特히 規律違反, 作業怠慢 및 長期不就業者 또는 長期服役者들에게 精神的解弛를 防止하고 健全한 國民思想과 更生意慾을 가지도록 재촉구하는 教育 등의 2가지로 되어있다.

隔離拘禁과 自由의 制限에서 基因되는 情緒觀念의 缺如를 방지하고 出所後 社會適應과 所內生活을 圓滿히 하기 위해 在所者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情緒教育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表 7〉

受刑者 教化行事施行現況

(단위 : 명)

연도	내용	教 育	教 誨	映 畫	講 演	社會參觀	慰 安 會	體 育 會	其 他
1 9 7 5	2,471	16,572	6,897	302	86	339	99	51,115	
1 9 7 6	2,480	16,592	6,996	308	89	345	101	50,815	
1 9 7 7	3,014	79,337	1,815	333	150	392	82	41,449	
1 9 7 8	2,932	26,706	2,128	248	17	59	71	13,303	

資料 : 한국의 矯正行政, 治刑協會, 1979

그러나 教育과 教誨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이런 program의 혜택을 받는 者도 限界가 있으며(78년도 수용인원 50,669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1% 정도) 이 program이 在所者들의 情緒的問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所內 雾靄氣의 圓滿함을 기대할 만한 것이 못된다. 특히 慰安會나 體育會는 연례행사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在所者들이 정서적 불안이나 욕구가 발생할 때 적시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1971年부터 法務部例規(1970. 12. 19)에 의거하여 外部專門人士들로 구성된 篤志訪問委員가 운데에 收容者로부터 面接申請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委員으로 하여금 個別 또는 集團으로 面接케 하여 助言, 教養, 苦情處理, 장래생활에 대한 指導 등을 行하는 制度인 篤志訪問委員制が 교도소의 “社會의開放化” 方針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委員의 構成과 活動狀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²⁾

그러나 이 가운데서 고려하여야 될 것은 비록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委員會라 하더라도, 이들의 專門知識의 水準과 연령, 그리고 이들이 割愛할 수 있는 時間이 問題가 될 수 있다. 즉

22) 治刑協會, 韓國의 矯正行政, 前揭書, p. 35.

〈表 8〉 독지방문위원회의 構成(1978年度)

業種別	宗教人	社會事業體	教育者	法曹人	새마을指導者	醫師	其他
人員	104	57	21	13	11	12	37

〈表 9〉 독지방문위원회의 活動狀況²³⁾

年 度	區 分	委 員 數		訪 問 回 數		面 接 人 員
		1	2	3	4	
1	9	7	1	194	1,228	2,078
1	9	7	2	218	1,543	3,927
1	9	7	3	184	2,314	4,174
1	9	7	4	204	2,539	7,156
1	9	7	5(10)	219	1,536	7,384

이들이 委員으로서 지녀야 할 知識, 기술 등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認定받는 者들이나가 중요하며, 年齡에 있어서도 과연 在所者들과 어느정도 意思疏通이 가능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인가를 고려 해야만 한다.

이외에 각 종파에서 行하는 宗敎敎育(총집회, 매주집회, 재소자와의 相談, 가족과의 相談 등)과 教化用雜誌「새길」과 左翼受刑者 心理工作作用인 간행물 「교화자료」를 발행하여 情緒醇化에 기여코자 하며 圖書閱讀으로 知識啓發과 精神修養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에 있어 단 2가지 종류의 간행물과 1963년 기준으로 3,000권정도의 적은 도서수²⁴⁾로 국한되어 있어서 도서를 통한 교정에의 寄與度는 아주 미약한 것이다.

한편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교도소내 상주하는 목사나 신부 등이 없고 단지 정해진 시간에만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制限性 때문에 종교교육을 통해서 기대되어지는 감정의 순화, 교도소내의 적응문제 등의 상담 등 교정효과에 기여되는 정도가 크게 잡소되고 있는 실정이다.²⁵⁾

6) 職業訓練의 效果에 관한 實態調查 結果

이상에서는 관계 당국에서 발표한 문헌에 立脚하여 우리나라의 現行 受刑者 직업훈련에 현황을 기술한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言及한 대로 그 자체만 가지고 직업훈련의效果性與否를 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기간동안 職業訓練을 받거나 받지 않고 출소한 수형자들을 상대로 직업훈련이 그들의 社會復歸와 定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설문면접방법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23) 慎鎮揆, 刑事政策(2)(서울:法文社, 1976), p. 243.

24) 權純永, 許柱旭, 行刑學(서울:一潮閣, 1981), p.315.

25) 林善, 效果의 矯正事業을 위한 民間參與에 關한 研究(崇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시간적 制約과, 출소자들의 居住地確認의 어려움과, 확인된 출소자들의 面接忌避現象 등으로 설문면접자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었다. 이러한 制限性을 前提로 실시한 설문면접 중 중요한 項目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設問面接 應答者의 就業現況

應答者 총 215명 중 調查當時 就業中에 있었던 사람은 161명 (75%) 이였고 이를 다시 職業訓練有無로 區分해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表 10>

設問面接 應答者의 就業現況

(단위 : 명)

취업여부 직업훈련교육여부	有職		無職		計
	직업훈련 받은 자	직업훈련 받지 않은자	7	47	
計	51	110	7	47	58
	161	54			157
					215

(2) 職業訓練을 받게 된 動機

<表 11>에서 보듯 公共職業訓練課程의 경우 훈련을 받게 된 動機가 교도소에서 직업훈련에配置하였기 때문에 받았다는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또한 뚜렷한 目的意識이 없이 그냥 훈련을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訓練을 받게 됐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表 11>

職業訓練을 받게 된 動機

직업훈련	동기	강제	사회에서 활용	그원해서	가석방	기타	기술습득	무응답	계
민간기업지원	5	4	2	4			1	5	21
정예직업	1	1	1			1			4
공공직업	15	6	7			1		1	30
일반직업		1	1			1			3
계	21	12	11	4	3	1	6	58	

이 표에서 보듯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앞서 受刑者들에게 직업훈련의 동기부여를 하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나 또는 企業體側의 說明과 前望 등에 대한 對話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3) 出所後 就業時 當面했던 問題點

출소 후 수형자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身分保障, 技術不足理由, 財政保證提出要件 등등으로 당면했던 문제점들을 재소시 직업훈련을 받았던 사람과 받지 않았던 사람별로 區分하여 보면 <表 12>와 같다.

<表 12>

出所後 就業時 問題點

직종	취업시 문제점												계	
	없었다	실분보장	기술부족	재정보증	사내분위기	기타	열등감	신재보	신정증	신보장부	분기기술	소개소	무응답	
(A) 직업훈련과 관련직종	11	1	2	1	2								4	21
(B) 전직업과 관련직종	7	1											3	11
A, B 와 무관한직종	15	8	4			1	1						22	51
A, B 와 무관한직종	3	3		1	1			1				5	14	
A, B 와 관련된 직종	14	11	3	1		2	1	1	1	1	1	1	23	59
계	23	6	2	2	3			1					14	51
	29	19	7	1		3	2	1	1	1	1	1	45	110

(斜線의 上端은 職業訓練을 받은 者의 數이고, 下端은 在所時 職業訓練을 받지 않은 者의 數임)

위 表에서 보듯 훈련을 받고 就業한 응답자 51명 중 23명 (45%)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취업이 되었음에 比하여 훈련을 받지 않고 출소한 뒤 취업한 자 110명 중 29명 (26%) 만이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職業訓練받은 사람 대부분은 事前에 직업훈련을 실시한 기업체들에 의하여 就業保障를 받았었기 때문에 出所와 더불어 별다른 문제를 당하지 않고 취업이 된 것으로 判斷이 된다.

(4) 就業時까지의 遊遙時日

제소시 직업훈련을 받은 자는 出所後 일개월이내에 51명 중 63%에 해당하는 32명이 취업을 하였음에 比하여 職業訓練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110명 중 43%인 47명에 불과하였다. 그러

<表 13>

就業時 까지의 遊遙時日

(단위 : 月)

직종	취업시까지 소요시일												계
	1	2	3	4	5~6	7~12	13~18	19~24	25~30	31~36	36이상	무응답	
(A) 직업훈련과 관련직종	18				1	1						1	21
(B) 전직업과 관련직종	9			1		1							11
A, B 와 무관한직종	29	6	5	2	1	1			3			4	51
A, B 와 무관한직종	1	1	1	1	1	1		1			1	6	14
A, B 와 관련된직종	18	7	1	8	4	12			1		1	7	59
계	32	1	1	3	2	2		2			1	7	51
	47	13	6	10	5	13		3	1		1	11	110

나. 後者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3個月 이내까지는 모두 66명 즉 60%가 就業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 言及했던 바와 같이 출소후 3個月이 “累犯孵卵期間”이라고 불리우리만큼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있어서는 決定的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應答者들의 60%이상이 3個月이내에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설문 면접에도 응답할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보겠다.

(5) 就業經緯

<表 14>에서 보듯 기업체에 의하여 실시된 직업훈련을 받았던 수형자들은 그企業에서 취업의機會를 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經緯를 거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었으며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던 受刑者들 중 53명(48%)은 자기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활동했어야만 함을 보여 주고 있다. 換言하면 출소자라도 자기 노력만 傾注한다면 취업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친구나 家族들의 소개를 통해서 就業하고 있는 형편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都合 110명 중 58명, 약 53%)

〈表 14〉 就業 經緯

직종	취업경위	就業 經緯									계
		스스로	친척가족	친구	기업	종교단체	선배	교도관	무응답		
(A) 직업훈련과 관련직종	2	1		17			1			21	
(B) 전직업과 관련직종	7	4								11	
A, B 와 무관한 직종	24	14	8				4		1	51	
A, B 와 관련된 직종	4	4	1		2		2	1	1	14	59
	29	9	17								5
계	14	9	1	21	2	1	6	1	3	51	110
	53	23	25						2		

(6) 資格證使用與否

직업훈련 후 取得한 技能士資格證이 就業時 어느 정도 活用되었는가를 <表 15>는 보여 주

〈表 15〉 資格證 使用 與 否

직업훈련	자격증사용	資格證 使用 與 否			계
		사용했다	사용치못했다	무응답	
민간기업지원 직업훈련		21			21
정예직업훈련		1	2	1	4
공공직업훈련		3	12	9	24
일반직업훈련		1	2		3
계		26	16	10	52

고 있다.

(7) 就業期間

調查當時를 基準으로 하여 한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기간을 보면, <表 16>에서 보듯 매우 安定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表 16> 就業期間

직종	취업기간	6개월	1년	2년	3년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무응답	계
		2		12	7					21
(A) 직업훈련과 관련직종										
(B) 전직업과 관련직종	3	2	1	1	1	2		1	1	11
A, B 와 무관한 직종	6	17	6	4	3	9	5	3	1	51
A, B 와 관련된 직종	11	11	13	13	4	4	2	1	14	59
계	5	7	20	8	1	6	4	2	1	51
	17	28	19	17	7	13	7	2	2	110

(8) 收入現況과 生活에의 寄與度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소자의 상당수가 취업후 月平均 15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收入을 올리고 있으며 때문에 <表 18>에서 보듯 응답자의 상당수가 그 정도의 수입이 자기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表 17> 收入現況

(단위 : 萬원)

직종	월수입	2~5 미만	5 10	10 15	15 20	20 25	25 30	30 35	35 40	40 45	45 50	70 이상	무 응 답	계
		6	1	10	4									21
(A) 직업훈련과 관계된 직종														
(B) 전직업과 관계된 직종	3		3	1		2					2		1	11
A, B 와 무관한 직종	1	8	9	7	13	7				2	1	3	1	51
A, B 와 관계된 직종	3	11	11	12	5	2	2	4	1			6	14	59
계	3 5	9 19	6 20	15 19	7 18	3 9	2	4	3	2 1	6 10	4	1	51
														110

<表 18>

生活에서의 寄與度

직종	도움정도	100% ~80%	80%이하 ~70%	70%이하 ~50%	50%이하	무응답	계
	(A) 직업훈련과 관계된 직종	7	5	7	1	1	21
(B) 전직업과 관계된 직종	5	3	2	1	3	5	11
A, B 와 무관한 직종	13	2	17	13	4	5	51
A, B 와 관계된 직종	8	12	20	10	9	14	59
계	2	2	1				5
	14	12	13	6	6	14	51
	21	29	33	13			110

(9) 職場에서의 待遇에 대한 滿足度

職業訓練을 받고 취업하고 있는 출소자들 중 현 직장에서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1명 중 31명으로서 6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110명 중 35%인 39명 만이 현 직장에서 滿足한 待遇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表 19>

職場에서의 待遇에 대한 滿足度

직종	대우	만족	보통	불만	무응답	계
	(A) 직업훈련과 관계된 직종	17	2	2		21
(B) 전직업과 관계된 직종	6		23	1	8	11
A, B 와 무관한 직종	4			16	6	14
A, B 와 관련된 직종	4				23	5
계	31	2	5	9	9	51
	39			24	42	110

(10) 現在 生活에 대한 出所者들의 滿足度 與否

총 응답자 215명 중 조사당시 職業을 가지고 있는 자와 無職者로 對別하고 다시 이들을 재소시 직업훈련유무로 나누어 그들이 현재 生活에 어느 정도 滿足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결과 <表 20>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表에서 보듯 在所時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직업유무를 불문하고 현재 생활에 불만이 많은데 비하여 職業訓練을 받은 자들은 不滿度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받고도 직업이 없는 사람은 현재 생활에 매우 높은 不滿度를 표시하고 있다.

〈表 20〉 現在生活에 대한 滿足度 與否

대상자		현생 활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무응답	계
有職者	직업훈련 안 받은 자	49(45)	9(8)	40(36)	12(11)	110	
	받은 자	28(55)	3(6)	15(29)	5(10)	51	
無職者	직업훈련 안 받은 자	4(33)		4(33)	4(33)	12	
	받은 자	1(14)		6(86)		7	
更生院		16(46)	4(11)	13(37)	2(6)	35	
	계	98(46)	16(7)	78(36)	23(11)	215	

()의 수치는 행의 계에 대한 %임

7) 評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受刑者職業訓練은 형식상으로는 體系를 갖추고 있으나 그 目標나 직업훈련의 教科內容, 實施方法 등에서 보면 상당한 制限性을 발견하게 된다.

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受刑者職業訓練의 一次的 目標를 교도소 내에서의 無事故 또는 출소후의 再犯防止 등에만 力點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再犯防止라는 효과적側面에서 볼 때 재소기간중 직업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一般受刑者間의 현격한 差異가 있음이 法務部 調査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이점만으로도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立證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한 직장에 定着하지 못하고 離脫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직업훈련이나 教化教育이 수형자들의 안정된 사회복귀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規範의 內在化나 態度의 變化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단순한 技術傳達이나 習得의 과정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媒體로 수형자들의 行動修正과 態度變化에 力點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②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現行 規定이나 選拔기준을 形式上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要員의 確保와 選拔基準이나 節次의 科學化 등을期할 때에 직업훈련을 보다 效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Daniel Glaser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훈련에 대한 강한 욕구와 성취동기를 가진 수형자들이 그렇지 아니한 수형자들보다 출소후 再犯하는 경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도 容易하게 定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⁶⁾ 그러나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上部機關에서 職種別로 할당한 훈련계획인 원을 몇 가지 간편한 審查(健康狀態, 本人希望, 前職業, 矯導所生活의 養好狀態 등)를 거쳐 채우는 기계적인 方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도 수형자 본인

26) Daniel Glaser, *Adult Crime and Social Policy*, op.cit., p.104

들의 희망업종에 配置되어 훈련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矯導所에서 배치해 주는 業種에서 훈련을 받게 되어 출소후 그 직종과는 다른 직종이나 收監前 職種을 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출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换言하면 그러한 수형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浪費를 招來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발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다.

③ 교화교육의 목적은 “전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의 함양”에 있다고 행형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도소내에서 수형자들에게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水準의 것이며 어떻게 자체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成果를 언급하기가 어렵다. 다만 外國의 事例에 비추어²⁷⁾ 이를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受刑者 자신들이 自習(self-study)하면서 자기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self instruction method)으로 教科內容을 編輯한 教材開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自己學習의 方法을 통해서 수형자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사회생활을 해가야 하는가를 자기 스스로 배우고 차기 스스로 採點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教材는 수형자들의 능력에 맞도록隨時로 再編成하여 점차적으로 段階를 높여가는 방식을 대체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教化教育과 職業訓練과 社會復歸의 3가지 目標가 有機的으로 연결시켜 주는 綜合的 方法을 발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교화교육프로그램을 외형상으로概觀하면 科目별로도 유기성이 엿보이지 않는 斷片的 시리즈의 인상이 짙으며 더우기 직업훈련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직업훈련의 目標가 교도작업을 위한 훈련에 있든 再犯防止와 社會復歸에 있든 현재의 교도소내의 施設과 專門訓練要員의 狀態로서는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의 방법으로 企業體에 의한 직업훈련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制度의 지원이 模索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고 현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한된 직업훈련이나마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대상자의 選拔뿐만 아니라 훈련하는 직종이나 기술수준이 출소후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綿密한 계획과 실시가 요망된다.

⑤ 끝으로 교도소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교도소라는 閉鎖的이고 強壓的인 분위기 내에서 교정목적을 위한 과정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制約性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직업훈련생과의 면담이나 출소자들과의 면접에서도 발견된 것은 직업훈련과정에 수형자들이 상당한 心理的 壓迫과 不安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과 焦燥感을 처리할 수

27) Michael A. Milan and John M. McKee, "Behavior Modification: Principles and Applications in Corrections," in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op.cit., Chapter 20, pp.745-76. 를 볼 것

있는 相談機會의 提供이나 출소후 취업에 관한 보도사업 등이 마련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많은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과연 그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懷疑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교도관이 시키니까 그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수동적이고 消極的인, 환연하면 뚜렷한 目的意識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心理的不安感에 휩싸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서 質的인 水準向上은 피교육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自發的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과정에 參與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이러한 環境의 造成은 교도소내에서 교도관에 의한 교정의 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 언제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民間資源人士나 社會團體에 의한 서비스의 提供과 기업체들에 의한 훈련 및 상담서비스는 교도소 자체의 교육과 훈련의 제약성을 緩和시켜 주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문제점과 앞으로의 課題를 提示하였다. 보다 실효성 있게 직업훈련제도를 擴充하고 改善하기 위해서는 綜合的인 對策이 講究되어야 하겠으나 이에는 상당한 시일과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훈련을 보다 實効性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요청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하에서는 行動修正理論과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概念과 方法을 소개하며 직업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模索해 보고자 한다.

III. 職業訓練의 效果提高를 위한 行動修正理論의 導入과 活用

1. 序論

수형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基本目標는 그들의 행동을 反社會的인 性格으로부터 社會適應의 行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출소후 그들이 圓滿하게 職場生活이나 社會生活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기 때문에 人間行動의 變化過程이나 變化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累次 언급한 바와 같이 人間行動의 變화에 대한 基本理論이나 原理를 직업훈련과정에서 應用하지 아니한 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교도소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機能(skill)”은 향상시켰을지는 몰라도 受刑者들의 態度 및 行動樣式의 變化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재범의 발생, 職場의 離脫, 家族生活의 不和등 社會不適應行動에서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행동의 變化를 實證的으로 實驗해 오고 있는 각종 이론 중 行動修正理論은 어

떠한 環境에서든지 廣範圍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特性때문에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에서는 수형자들의 교정에 응용하여 오고 있다.²⁸⁾

行動修正理論(behavior modification theory)은 근본적으로 人間의 行動은 다른 사람과 環境과의 相互關係의 作用을 통하여 習得한다는 社會學習理論(social learning theory)에 立脚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행동은 배운 것이다라는 사실에 根據하여, 行動수정이론은 行動主體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環境으로부터의 反復的 刺戟을 肯定的으로 또는 不定的으로 주면 行動主體는 거기에 反應하는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행동을 習得하게 된다.²⁹⁾ 그러면 行動주체는 새로 習得한 행동을 가지고 환경과 相互關係作用을 통하여 같은結果를 얻어 벌려고 하게 된다.³⁰⁾

즉 行動을 修正시키는데 있어서 核心的인 原理는 行動主體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行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刺戟을 주어 이를 強化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要컨대, 行動修正理論은 觀察되는 行動(observed behavior)에 基礎를 두고 있기 때문에, 感情, 態度, 느낌 등 行動의 根底에 깔려 있는 理由에 力點을 두는 心理治療方法(psychotherapy)과는 다르다. 또한 行動修正理論은 行動은 그 行動의 直接的인 영향(또는 結果)에 의하여 統制된다는 基本的 前提에 立脚하고 있다. 即 行動은 그 行動以後 나타나는 即刻的인 結果(immediate consequences)如何에 따라 增大되기도 하고, 抑制되기도 하며, 減少되기도 한다.

他人의 行動上 變化를 助長해 주는 主要 強化(reinforcement)의 概念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 肯定的 強化(positive reinforcement), 處罰(punishment), 否定的 強化(negative reinforcement), 消滅(extinction), 強化스케줄(schedule of reinforcement)³¹⁾ 以下에서는 이 다섯 가지 개념들을 어떻게 受刑者들의 職業訓練過程에 應用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肯定的 強化(positive reinforcement)

肯定的 強化란 行動이 強化되고 있는 그 個人이 願하는 또는 必要로 하는 것들을 말한다. 即 肯定的 強化物(positive reinforcement)은 그에 따르는 反應(the response)을 強化시키며 그 反應을 거듭 일으키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28) Ibid. pp. 745-76.

29) 기술적으로 이러한 반사적 行動을 일으키게 하는 조건을 "respondent condition(반사조건화)"라고 한다.

30) 이러한 行動주체의 行動을 기술적으로 "operant conditioning(작동조건화)"라고 한다. 이상 두가지 行動수정의 조건에 관한 이론이나 실험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음 한 두가지 문헌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William H. Redd et al., *Behavior Modification: Behavioral Approaches to Human Problems* (N.Y.: Random House, 1979), Ch.2 그리고 Alan E. Kazdin, *Behavior Modification in Applied Settings*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5), Chapter 1 and 2를 볼 것.

31) 以下은 다음 문헌에서 重點的으로 引用 내지 援用하였음. Paul Hersey and Kenneth H. Blanchar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Utilizing Human Resource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7), pp. 206-14.

바람직한 行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強化가, 反應行動이 일어나는 즉시 뒤따라야한다는 것이一般的理論이다. 強化物이 때를 놓쳐 버리면企圖하는 行動變化를 起起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留念해야 할 事項은 強化는 個人에 따라 그 反應에 差異를 나타낸다는 事實이다. 한 개인의 行動變化에 영향을 주는 強化物(例를 들면 賞金, 休息, 칭찬, 좋은 給食)이 딴 사람에게는 별다른 反應을 起起시켜 주지 못할 수 있다는 事實이다. 또한同一한 個人이라도 다른 時間, 다른 環境(setting)에서는 다른 일이 그의 動機를 강하게 유발할 수도 있다.

故로, 受刑者들에게 職業訓練을 實施함에 있어서 技能資格士證發給과 假釋放을 모든 受刑者들이 願하는 바라고 지나치게一般化하여 受刑者個個人의 事情이나 出所後希望 등을 고려치 않은 채一方的으로 技術傳授에만 급급하는 것은 受刑者들의 態度變化에 높은 實效성을 거둘 수 없게 만든다.

行動修正理論의 原理에 立脚하면, 訓練期間中에 수시로 受刑者들이 要望되는 行動을 보여주거나 일정 수준의 技術習得의 實績을 보이면 그 때마다 여러種類의 報償中本人이 虐망하는 것을 주거나 施行해 주면 그만큼 行動變化를 強化시킬 수 있다. 現在는 職業訓練의 目標를 技能資格士證取得이라는 目標 또는 報償하나만을 놓고 長期間의 訓練課程中 그들의 行動變化를 그때 그때 強化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技能(skill) 습득에만 머무르고 行動變化의 強化物로서 職業訓練이 活用되고 있지 못하다. 行動의 變化는 一時에 일어나지 않는다. 時間의 經過에 더불어 環境과의 相互關係를 통하여 習得되고 반복하는 것이니 만치 職業訓練全過程에 多樣한 強化物로 체워주는 環境造成이 要望된다. 訓練過程中 수시로 제공받는 強化物 때문에 行動化가 빨라질 수 있음을 많은 實驗에서 立證되고 있다.

3. 處罰(punishment)과 否定的 強化(negative reinforcement)

處罰은 어떤 反應이 일어난 뒤 똑같은 반응행동을 起起시키지 않기 위해서 使用하는 否定的 結果를 말한다.

處罰이 處罰을 받게 하는 行動을 抑制하는 것처럼 否定的 強化는 處罰을 除去해 주는 反應行動을 強化시켜 준다. 이 兩者의 關係의 例를 들면 訓練指導官이 機械操作法을 說明하는데 한 受刑者訓練生이 옆의 受刑者에 雜談을 하는 경우에는 “조용히 하라”고 命令하는 대신, 教官이 說明을 中斷하면서 잡담하는 受刑者側을 바라보면, 集團全體가 왜 教官이 說明을 中斷했는가에 集中하게 된다. 예기치 않았던 침묵, 즉 否定的結果(a negative consequence)는 雜談하는 受刑者에게 不安全感, 즉 處罰(punishment)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雜談을 中斷하고 教官의 說明을 듣게 된다. 換言하면 教官의 침묵과 응시는 雜談行動을 弱化 내지 抑制시키게 한다. 同時에 이것은 그의 경청행위를 強化하는 否定的強化(negative reinforcement)

로서 作用하게 된다. 즉, 教官이 說明을 中斷하고 自己를 응시하는 處罰을 除去하는 行動을 強化하는 것이 된다.

留念해야 할 事實은 處罰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注意를 要한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處罰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反應行動을 보일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때로는 處罰을 받은 受刑者가 他同僚의 진지한 學究熟이나 行動變化를 驟방(disrupt)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留意해야 할 點은 處罰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보여 주어도, 해야 할 것은 보여 주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비록 處罰이 그 당장에 不適合한 行動을 中止시키는 데에는 效果는 있어도 長期的인 效果는 없다는 것이 一般的의 研究의 結果이다.

John Huberman의 研究에 의하면³²⁾ 어느 地方矯導所에 收監된 受刑者들의 85%가 석방후 3年以內에 그 교도소로 되돌아 왔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따라서 矯導所當局은 矯正制度의 實效성에 의심을 품고 보다 效果的인 새로운 方法을 創案했는데 即 “處罰 없는 訓育”(discipline without punishment)의 方法이었다. 不滿足스런 受刑者들의 行動에 處罰의 接近方法을 쓰는 대신 適合한 行動을 명료하게 미리 設定해 놓고 각자로 하여금 그것에 順應할 것이나, 안 할 것이나를 決定하도록 負擔感을 갖게끔 한 結果, 훨씬 肯定的인 반응행동을 보였다는 實證的研究가 있다.

4. 消滅(extinction)

어떤 行動이 일어난 뒤, 強化物이 取消되면, 그 行動은 消滅되게 된다고 말해 진다. 處罰은 行動을 抑制시키는데 그러나 消滅은 그 行動을 사라지게(disappear) 만드는 경향이 있다. 어떤 反應行動을 消滅시키기 위해서는 그 行動의 結果로서 무엇이고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

휘파람 부는 行動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때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의 要求事項을 들어 주지 않거나 約束한 強化物을 取消하면 차츰 휘파람 부는 行動을 버리게 된다.

但 留念할 것은 휘파람을 故意的으로 불지 않은 경우에도 無差別하게 消滅方法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點이다. 왜냐하면 휘파람부는 行動以外의 修正되어 가는 行動을 反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處罰과 消滅方法은 알맞게 使用할 때 效果를 얻을 수 있다. 어느 때 處罰方法을 쓸 것이며 어느 때 無視할 것이나(強化物을 取消함으로서 消滅시키느냐)를 決定하기 위해서, 指導官(者)은 그 바람직하지 않은 行動이 어느 정도 오래동안 일어나고 있는가를 測定해 볼 필요가 있

32) John Huberman, "Discipline Without Punishment," *Harvard Business Review*, May, 1967. pp. 62~68. 上記 문현 p. 210에서 引用한 것을 再引用하였다.

다. 만일 그 行動이 새로운 것이라면, 無視(消滅方法) 해 버리는 方法이 좋은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즉 그 行動을 빨리 버리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만일 그 行動이 어느 期間동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肯定的強化의 結果로서 바람직한 行動이 充分히 強化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을 代置할 때까지 處罰方法을 使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強化스케줄(Schedule of Reinfor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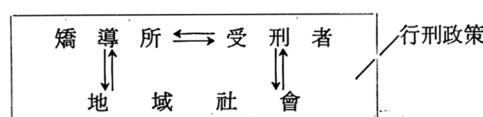
일단 受刑者들이 職業訓練이나 教化教育을 받으면서 새로운 行動을 보여 주면 그 새로운 行動이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消滅되지 않도록 關心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事態의 발생을豫防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方法으로 強化物을 計劃해야만 한다(Schedule). 이에는 두가지 強化스케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持續的인 것(continuous)과 간헐적인 것(intermittent)을 들 수 있다. 持續的強化는, 訓練을 받은 受刑者가 出所後에도 訓練期間에 보여 준 바람직한 行動을 職場이나 社會에서도 계속하도록 職場이나 社會에서도, 受刑者가 訓練期間中 強化되어진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바람직한 行動을 취할 때마다 強化시켜 주는 것을 意味한다. 간헐적 강화는 보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必要時에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點에서 受刑者의 원만한 社會復歸나 職場生活의 定着을 위해서는 矯導所에서의 교정사업과 地域社會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形成을 통한 統合的矯正메카니즘이 절실히 요망된다. 相當數의 受刑者들이 在所期間中 技術을 익히고 行動上 變化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出所後 社會나 職場에서 그들을 적절히 受容하면서 行動을 지속적으로 強化시켜 주지 못하는데서 再犯이나 職場離脫, 家庭不和 등 원치 않는 經驗을 다시 하게 된다.

IV. 受刑者의 社會統合을 위한 地域社會內矯正事業

1. 序論

現代矯正事業은 矯導所內에서의 事業(programs)에만 局限시키고 있지 않다. 矯正의 궁극적인 目的이 受刑者들이 出所後 社會生活에 定着하여 健全한 市民으로서 自力更生하도록 支援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矯導所——受刑者——地域社會, 3者間의 有機的인 關係形成은 矯正事業의 目的具現에 있어서 基本的인 要素라고 할 수 있다. 3者間의 關係를 圖式으로 表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即 行刑政策의樹立과 執行에 있어서 3者間의 有機的인 相互交流關係의 形成과 원활한 活性化를 前提로 해야만 한다.

앞의 章節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受刑者들의 教化教育과 職業訓練을 위한 矯導所內의 施設과 專門要員의 絶對不足 때문에 企業體들에 의한 支援職業訓練이 絶對的으로 要望될 뿐만 아니라 설령 矯導所 自體의 施設과 要員만으로도 受刑者들의 社會復歸를 위한 需要去를 充足시킬 수 있다고 해도 出所後, 社會에서 그들을 제대로 受容하지 못할 때에는 엄청난 浪費와 社會的費用을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矯正事業에 있어서 地域社會의 參與는 現實的 要請일 뿐만 아니라 그 效果性은 各種 實驗을 通해서 이제는 거의 理論的으로 確立되어졌다고 하겠다. 이러한 背景에서 確立되어진 概念이 地域社會內矯正事業(community-based correctional services)이며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에서는 광범위하게 應用하고 있다. 本章에서는 이 개념을 援用하여 受刑者들의 職業訓練過程, 出所後 就業過程, 職場生活에의 定着 등에 어떻게 地域社會의 資源이 效果的으로 動員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基本概念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은 2次大戰後 美國에서 實驗的으로 실시하여 이제는 광범위하게 活用하고 있는 矯正事業의 하나이기는 하나, 아직도 이 分野의 從事者나 專門家들 以外에는 널리 알려진 概念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 效果性에 관한 實證的研究도 아직 初步段階이기 때문에 矯正當局이나 行刑政策에 널리 受容되고 있지 못한 實態이다.³³⁾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은 어디까지나 矯正事業의 主體인 國家가 矯正의 目的을 위하여 矯導所外部 現實社會內에서 矯正事業을 實施하거나 地域社會資源을 活用한다는 點에서 地域社會內各種 社會福祉機關이나, 出所者들을 위한 씨비스 機關의 活動과는 相異하다. 비록 後者가 受刑者들의 社會復歸나 定着에 各種 씨비스를 提供해 줌으로써 크게 기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自發的 寄與에 지나지 않으며 矯正事業 主體로서의 活動으로는 看做될 수 없다³⁴⁾

要컨대,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主體는 어디까지나 國家이며 地域社會의 民間資源은 國家에 의한 矯正事業에 參與하는 파트너(partner)로서 理解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國家는 國家의 財政으로서 民間機關이나 要員, 專門家들을 支援하며, 그들의 活動에 必要한 施設을 設置, 供與할 수도 있으며 或은 地域社會內에 設置한 國家施設을 그들에게 委託하여 管理, 運營할 수도 있다.

또한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은 矯導所外部 社會에로 矯正事業을 延長하는 概念으로만 局限하

33) H.G. Moeller, *op.cit.*, p. 895. 以下는 同論文을 中心으로 서술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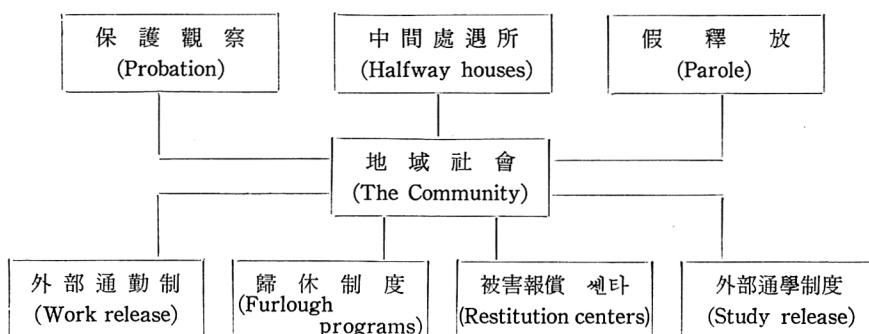
34) John Ortiz Smykla, *Community-Based Correc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op. cit.*, p. 9.

는 것이 아니라, 矯導所內에도 地域社會를 接近시킴으로써 “교도소내의 社會化”도 目標로 하고 있다. 換言하면 受刑者들이 矯導所內 生活過程에서 地域社會內에서의 生活規範과 필요로 하는 行動樣式을 배우고 內在化할 수 있게 하여 出所와 [더 불어 社會適應이 곧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概念을 포함시키고 있다.

要컨대,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이란 受刑者들로 하여금 出所後 社會生活適應과 定着에 필로 하는 地域社會와의 連帶關係를 出所前에 맺을 수 있도록 해 주는 矯正事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³⁵⁾

3.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種類

現在 美國에서 實施되고 있는 典型的인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을 圖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³⁶⁾



이러한 制度들은 그 社會의 特殊한 狀況속에서 서서히 長期間에 걸쳐 社會制度(social institutions)로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目標 運用原則, 運用方法, 效用性, 限界性 등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個個制度의 歷史的 發展過程을 그 社會의 行刑制度의 발전과 연계적으로 追跡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本 研究의 범위를 벗어나는 領域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受刑者들의 職業訓練과 社會統合과 관련하여 主要內容을 略述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³⁷⁾ 따라서 假釋放制度나 保護觀察 또는 執行猶豫制度 및 범법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전제로 실형선고를 대체하는 피해보상제도(Monetary Restitution) 등과 같은 行刑制度에서 널리 알려져 이미 活用하고 있는 制度는 省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나 「美國 등 선진국에서

35) *Ibid*, p. 8.

36) Donald Brieland et al., *Contemporary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0), p. 336.

37) 이에 관한 國內文獻으로서는 다음것을 參考할 것.

權純永, 許柱旭 共著, 行刑學(서울:一潮閣, 1981版), 第4章 및 5章;
慎鏡揆, 刑事政策(II)(서울:法文社, 1976), 第9~11章;

南興祐, 刑事政策(서울:博英社, 1980版), pp. 295~339.

는 그 有用性이 增大해 가고 있는 中間處遇所(Halfway House) 制度와 같은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中間處遇所(Halfway House)

美國에 있어서 中間處遇所는 1800年代부터 몇 군데에 設置되어 운영된 적은 있으나 그 후徐徐히 發展되어 오다가 1930年代에서 1950年代 初까지 經濟的 沈滯 등으로 後退하였으나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重要性이 高潮되기始作하여 現在는 全國에 約 400個의 中間處遇所가 設置운영되고 있다. 公共 및 民間, 男女有別 또는 男女公同 등 中間處遇所에 하루 평균 10,000名程度가 入住되어 平均 8~16週間 居住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利用率도 미네소타州의 경우, 1975年 한해에 37.9%에서 58.6%로 增加있으리만큼 上昇하고 있다.³⁸⁾

中間處遇所는 矯正過程에 있어서 두 가지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첫째 機能은 外部中間處遇所(halfway-out house)로서의 役割인데, 여기서는 受刑者들에게 出所前, 地域社會에 復歸하여 定着할 수 있는 過渡的 段階로서 必要한 씨비스를 提供하는 것인데 가장 普通의 機能이다. 둘째 役割은 矯正機關에서 필로한 資源으로서 씨비스를 提供해 주는 기능인데, 이를 흔히 内部中間處遇所(halfway-in house)라고 부른다. 即 裁判前의 拘留者, 執行猶豫者, 保護觀察者藥物中毒治療所에서 放免된 者, 假釋放者들에게 住居, 음식, 屋內監督(in-house supervision)등을 마련해 주는 것을 意味한다. 最近에는 中間處遇所에 入所시키는 것을 實刑宣告 代替로서, 矯正機關에서의 收容代替로서 考慮되고 있다.

1973年 美全國矯正諮詢委員會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Corections)는 中間處遇所의 役割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의한 바 있다.³⁹⁾

"Courts should not have to choose between total freedom and total confinement. The trend toward use of community-based programs for offenders after a period of incarceration suggests that community oriented programs with state control over leisure time are a valuable tool that should not be preconditioned in all cases on a period of total confinement. In addition, there may be resources available in the community which could provide a group living situation and supervision without the hardware and institutional control characteristics of most jails and other correctional facilities. Thus, courts should have "halfway-in" houses available to them for sentencing dispositions, comparable to those available to institutional decision-makers."

John O. Smykla 教授는 犯法者를 위한 中間處遇所의 活用을 다음 세 가지 理由로 支持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⁴⁰⁾

38) John Ortiz Smykla, *op. cit.*, p. 158.

39) 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Correctio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p. 570, 上記書 p. 159에서 引用한 것을 再引用하였음

40) John Ortiz Smykla, *op. cit.*, p. 160.

첫째, 犯法者의 人間的處遇를 들 수 있다. 교도소내의 密集된 群居, 나태한 생활, 불결한 위생시설, 不足한 矯導作業施設 등 대신 中間處遇所에 入所되는 경우에는 家族이나 親知들과의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就業機會도 유지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長期間收監되었다가 出所하는 것 보다는 社會復歸나 統合이 自然스럽게 容易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犯法者의 成功的인 社會再統合(reintegration into society)은 地域社會 背景을 갖춘 여건속에서만 可能하다는 點 때문에 中間處遇所는 適切한 道具로서 看做되고 있다.

세째, 社會的 再統合을 위한 費用面에서 볼 때 中間處遇所를 活用하는 것이 矯導所에 拘禁하여 教化, 訓練하는 것 보다 저렴하게 듣다는 實利的인 측면도 重要視되고 있다. 1974年, 한 研究報告書에 의하면 成人犯法者 1人當 所要되는 年平均 費用에 있어서 中間處遇所의 경우 2,000弗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에서 보듯, 個個 中間處遇所는 犯法者들로 하여금 地域社會生活에의 接近과 適應을 容易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目標(goals)를 可能하게 해 준다.⁴¹⁾

- ① 良好한 就業條件의 開發
- ② 出所後 受刑者가 원하는 就業의 주선
- ③ 教育에 적절한 分위기 造成
- ④ 矯導所 拘禁의 減少
- ⑤ 矯導所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效果的인 居住矯正事業의 提供
- ⑥ 國庫의 節減效果

현재 美國에 있어서 어떤 犯法者를 中間處遇所에 입소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節次와 政策에 관해서는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나 두 가지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짧고 初犯이거나 아주 경미한 犯法行爲를 한 자를 우선적으로 入所시키는 경향이 있고

둘째, 就業側面에 政策이나 事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就業보다는 못해도 教育과 職業訓練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中間處遇所는 内外적인 두 가지 역할에서 미국의 矯正過程에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中間處遇所의 運營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생략하였으나 이 개념은 우리 현실에 導入하고 活用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다양한 經驗과 問題點을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文獻調查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中間處遇所의 入所者들은 矯導所에서 곧장 地域社會로 出所된 자에 비하여 再犯率이 훨씬 낮으며 또한 中間處遇所는 就業機會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41) Donald J. Thalheimer, *Cost Analysis of Correctional Standards: Halfway Houses*, Vol.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3), p. 6, J.o. Smykla, *op.cit.*, p. 160에서 引用한 것을 再引用하였다.

中間處遇所를 일단 떠나면 就業率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中間處遇所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안전성(community safety)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外部通勤制(Work-Release program)와 外部通學制(Study-Release program)

Work-Release(Work-furlough)를 흔히 “外部通勤制”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사회내에서 犯法者들을 更生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미국에 있어 外部通勤制은 1913년 Wisconsin 주에서 시작되었으나 거의 반세기 후에야 다른 주들에 파급이 되어 1965년 까지 24個州가 外部通勤制를 입법화하였고 같은 해에 美政府는 联邦矯導所再活法(the Federal Prison Rehabilitation Act)를 입법화하여 中間處遇所와 外部通勤制事業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결과로 1975년도까지 모든 50개주와 연방정부는 또한 地域社會事業(community work)과 教育通學制를 허용하는 법률을 가지게 되었다.

外部通勤制나 外部通學制는 中間處遇所와 마찬 가지로 그 목적이 犯法者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해 줌으로써 犯法者의 再活과 社會的 統合을 용이하게 해줄에 있음을 명백하다.

이들 제도의 운영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 4가지 기준에 따라 受刑者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있다.⁴²⁾

- ① 보안위험성(security risk)이 높지 않은 자
- ② 재범 가능성성이 적은 자
- ③ 재활 가능성이 높은 자
- ④ 믿을만한 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주에서는 外部通勤時間 후에는 다시 矯導所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中間處遇所나 外部通勤센타(work release centers)를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外部通勤制는 輕犯受刑者들에게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취업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社會的 統合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범법자들로 하여금 受刑期間동안 취업케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각종 비용을 自負擔시켜 國庫費用負擔을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再犯방지보다는 재정적 측면에서 실시되었으나 再犯率 低下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Lawrence S. Root, "Work Release Legislation," *Federal Probation* 36(March, 1972), pp. 38~43. Martin R. Haskell and Lewis Yablonsky, *Criminology: Crime and Criminality*(2n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8), p. 558에서 引用하였다.

유사하게 外部通學制度 범법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와의 關係形成 및 維持를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 뿐만 아니라 資格證取得, 專門知識의 習得등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出所와 더불어 社會的 統合과 自力更生能力을 보장시켜 준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受刑者들의 職業訓練의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中間處遇와 外部通勤制는 특별히 직접적인 실효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다음에서 보듯 이 외에도 미국이나 선진제국에서는 다양한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을 실시하여 受刑者들의 態度變化와 出所後의 社會統合을 目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도 受刑者에게 職業訓練을 실시하는 경우肯定의 強化物로서 활용한다면 職業訓練에 대한 보다 높은 意慾과 動機를 유발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料되어 다음에서 略述하고자 한다.

3) 기타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種類

① 歸休制度(Furlough Programs) ——重病이나 直系尊卑屬이 死亡하거나 危篤한 때 외에도 家族과의 連結, 性의 調和, 職業의 救濟, 變遷하는 社會의 認識 등의 필요에 의한 一時家庭歸休(the temporary home furlough), 釋放前歸休(the prerelease furlough), 嘉勵歸休(the incentive furlough) 및 特別歸休(special holiday furloughs) 등의 사업이 있다.⁴³⁾ 특히 직업훈련을 받은 受刑者들이 좋은 훈련태도나 훈련성과를 보일 때, 이런 태도나 성과를 보강하기 위한 긍정적 補強物로써 歸休制度를 활용할 수 있으며, 職業訓練을 수료한 受刑者들에 대하여 그 직종의 직장을 사회에 나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출소후 社會生活이나 職業訓練에 대한 강한 動機賦與를 할 수 있다.

② 家庭保護(Foster Homes) ——범죄자를 어떤 가정에 居하게 하거나 全時間家庭的 保護와 訓練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서,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적응문제를 안고 있는 자에게 그를 지원할 수 있는 情緒的, 物質的 資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정에게 出所者를 위탁하여 돌보게 해주는 제도이다.⁴⁴⁾ 따라서 현재 職業訓練을 받고 있는 受刑者로써 出所後 당장 돌아가 정착할 수 있는 가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형편상 再結合이 어려운 受刑者들에게 위와 같은 가정을 알선해 준다는 것은 行動修正에 있어서肯定의 強化의 측면에서 그리고 社會統合의 측면에서 유효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업체에 의한 受刑者의 職業訓練의 경우 그들이 出所後 직장에 배치될 때 그 직장의 간부나 또는 직장동료의 가정에서 일정기간 함께 기거하면서 정착을 도울 수 있다면 受刑者의 社會的 適應과 統合의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社會事業分野에 있어서 고아들에게 이상과 같은 家庭保護(Foster home care) 조

43) John Ortiz Smykla, *op.cit.*, p. 98

44) *Ibid.*, p. 201.

치를 하는 것이 孤兒院과 같은 밀접한 기관에 수용보호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전전한 情緒的, 身體的 발달과 性格形成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一般化된 實證的 事實이다.

4. 우리나라의 現況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기업체에 의한 수형자 직업훈련외에 1961年 9月 法律 第730號로 공포된 更生保護法과 同法施行令(1977년 5월 4일 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更生保護會와 그支所의 사업으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간헐적으로 몇 개의 사회단체에서 自願奉仕(voluntary services)로 출소자에게 寢食을 提供하거나 혹은 就業斡旋 등 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財政 및 施設 또는 要員의 부족등으로 持續性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기관이 矯正事業의 一環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地域事會內矯正事業의 범주로서 간주되기 보다는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의 資源活用의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更生保護會의 事業과 運營現況만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更生保護事業의 沿革

한국의 更生保護의 年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단계는 1961年 以前으로 朝鮮司法保護事業令에 의거하여 司法保護라는 이름으로 財團法人體인 司法保護會, 司法保護委員會 및 司法保護事業助成會 등에서 更生保護事業을 實施하였다.

둘째 단계로는 司法保護라는 用語를 更生保護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사업도 위의 재단이 解放된 때로부터 公法人體로써의 更生保護會가 각 道廳所在地에 하나씩 設立되고 그 산하에 각 矯導所所在地마다 更生保護所가 設置되었다.

세째 단계는 1963年 2月에 更生保護法中 一部가 改正된 때로서 그 對象을 少年院도 포함시키고 그 機構도 法務部長官監督下에 1개의 更生保護會가 設立되었고 각 更生保護會는 同會의支部가 되었다.

2) 更生保護의 目的과 對象

생생보호법 제 1 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再犯의 危險을 防止하고 그 自活獨立의 經濟的 基盤을 造成시켜 社會를 保護하고 個人 및 公共의 福利를 增進함을 목적으로 한다.¹⁾

- ①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을 終了한 者
- ②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免除을 받은 者

- ③ 假釋放中에 있는 者
- ④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
- ⑤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
- ⑥ 公訴提起 猶豫處分을 받은 者
- ⑦ 少年院에서 退院 또는 假退院한 者

3) 更生保護事業의 種類

更生保護事業의 종류로는 다음 3가지가 있다.

- ① 收容保護——無依無託者를 保護會가 運營하는 收容施設에 入住시켜 衣食供與와 함께 就業斡旋, 職業輔導, 生產道具貸與, 身元保證, 依賴斡旋, 附帶事業場就業 등이 있다.
- ② 歸住保護——생생보호 대상자들이 生活根據地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旅費, 食費, 被服費 등을 支給하여 주는 사업이다.
- ③ 觀察保護——보호위원회가 보호대상자들과 서로 통신이나 相互訪問을 통해서 指導, 相談, 助言을 하고 선행을 장려하고 대인관계를 조성하여 更生을 돋는 사업이다.¹⁾

4) 生活보호사업의 組織

생생보호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法務部長官 監督下에 更生保護會를 두고, 서울特別市, 釜山市와 각 道에 保護會支部를 두고 法務部長官이 指定하는 矯導所 所在地에 保護支所를 두고 있으며 現在는 8개 支部와 30개의 支所를 두고 있는데 아래 <도표 2>와 같다.¹⁾

5) 保護節次와 實績

更生保護會에서 發행한 事業案內書에서 규정한 保護節次는 다음과 같다.

먼저 法院, 檢察廳, 矯導所 또는 少年院當局이 出所豫定者 중에서 要保護者를 選別하여 管轄更生保護會 支部 또는 支所에 保護依賴를 하면, 依賴를 받은 支部・支所에서는 事前調查를 통해서 保護할 必要가 있는가의 與否를 審查하여 保護方法을 決定 實施하게 된다.

또한 保護對象이 되는 사람은 出所前後를 莫論하고 當該矯正機關 혹은 更生保護會支部・支所에 直接 保護申請할 수 있다. 更生保護事業은 保護對象者の 性別, 年齡 또는 社會的 身分을 묻지 않고 公平하게 處遇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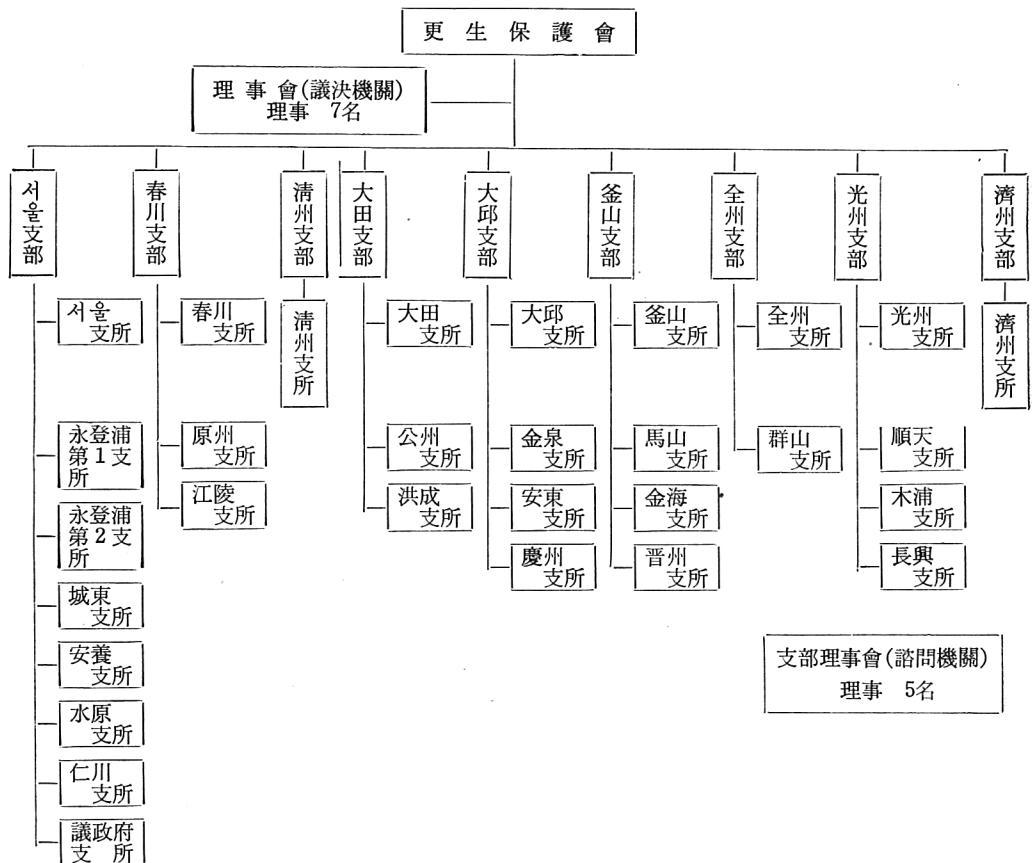
1980年度 事業計劃 및 實績에 따르면 <表 21>와 같다.

6) 問題點

以上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生活보호사업은 다른 나라에서의 中間處遇所와 같은 경우와는

<圖表 2>

更生保護事業의組織



<表 21>

保護事業의 計劃 및 實績

區分 支部別	收容保護		歸住保護		觀察保護		生業助成金		就業斡旋	
	計 劃	實績	計 劃	實績	計 劃	實績	計 劃	實績	計 劃	實績
計	(1日平均 310人) 113,460	87% (269) 98,391	101%		107%		88%		89%	
서울	58	55	3,840	4,958	4,100	4,228	410	344	150	295
春川	16	15	590	697	1,800	2,626	180	111	300	195
淸州	18	19	270	386	700	1,687	70	70	400	413
大田	60	46	1,490	1,540	2,000	1,647	200	20	1,750	1,234
大邱	60	46	2,720	1,885	3,200	2,719	320	289	750	626
釜山	56	52	2,060	1,969	3,400	3,846	340	294	800	712
全州	27	21	870	741	1,700	1,958	170	163	700	812
光州	15	15	2,040	1,831	2,900	2,388	290	264	600	563
濟州	0		120	152	200	306	20	17	50	41

달리 更生保護法 第 1 條에 規定한 刑餘者들의 任意的인 申請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再犯可能性이 높거나 出所後 거주지가 없는 刑餘者에게도 이들의 신청이 없으면 保護事業을 실시치 못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가석방이나 執行猶豫期間中에 있는 刑餘者에게도 任意的 更生保護(voluntary after-care)로써는 적절한 보호를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更生保護事業에 따른 財政의 財源을 살피면 國庫補助金과 自體收入金으로 되어 있으나 政府에서 更生保護事業을 교정사업에 있어 第 2 次的 事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支援은 미비한 수준이다. 고로 生생보호회 자체적인 評價에서도 任意的更生保護制度下에서 出所하는 者 中 要保護者의 約 半數에 대하여 貧弱한 形態의 保護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지적하였다.⁴⁵⁾

이 외의 문제로서는 更生保護委員에 대한 것이 있겠다. 현재 生생보호위원회는 更生保護法 第 2 條 및 第 6 條의 3에 따라 사회덕망가 중 支部長 추천에 의해 法務部長官의 委嘱으로 보호위원이 되며 觀察保護의 일을 맡게 된다. 그러나 保護委員들의 직업을 〈表 22〉를 통해 살피면 觀察保護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割愛하기 힘든 會社長, 商業, 醫師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들의 활동분야를 고려할 때 출소자들이 사회적응상 문제가 되어지는 情緒的 문제나 對人關係 등의 문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處理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게 된다.

〈表 22〉 更生保護委員의 職種(1980년기준)

公務員	商會社長	宗教人	農業	醫師	會社員	組合員	運輸業	工業	代議員	社會事業	司法書士	建設業	鑛業	藥師	言論人	蓄產業	其他	計
267	191	153	96	93	83	57	49	43	34	10	23	21	17	12	12	11	16	97 1,299

資料：更生保護會

개다가 保護委員으로서 활동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 보호위원 정원에 못미치는 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7) 기타 민간에 의한 生생보호 활동

출소자들의 社會適應問題를 도와주기 위한 민간의 각종 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宗敎機關에서 矯導所내에 독서물들을 持入해 주거나 출소자들의 침식을 제공해 주는 등 활동을 간헐적으로 실시한 기록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宗敎機關이나 社會團體들이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인 事業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데는 없다.

45) 更生保護會, 韓國의 更生保護(1970年), p. 22.

이번 연구과정에서 그나마도 소규모로 출소자의 更生保護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3개 단체와個人的 資源으로 출소자들을 돋고 있는 민간자원인사 6명을 면담하여 그들의 活動과 그들이 당면하는 問題點들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을 보면,

- ① 宗教教育의 실시
- ② 일시적인 寢食提供
- ③ 旅費補助
- ④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 ⑤ 相談 등이다.

한편 이들이 이러한 活動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更生保護事業의 社會的 問題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 ① 受刑者에 대한 社會的 拒否現象때문에 就業斡旋이 어렵다는 점
- ② 그들 자체의 施設 및 財源不足으로 活動을 체계있게 전개할 수 없다는 점
- ③ 地域社會나 官公署에서의 微溫的 態度 또는 支援의 결여 등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이러한 民間資源을 矯正事業의 社會的 資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을 주도하는 矯正機關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V. 結論 및 提議

1. 本研究의 요약과 결론

第1章 序論에서 언급하였듯, 本 研究의 목적은 수형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사회생활적응을 위한 矯正事業의 道具로서 직업훈련이 가지는 의의와, 현행 우리나라제도의 現況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다 實効性있는 도구로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代案을 찾아보는데 있었다.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는 교정사업전반에 걸친 연구가 아니라 矯導所内外에서 실시하고 있는 受刑者職業訓練에 국한하여 그 實態를 파악하는 데 두었다.¹⁾

따라서 제2장에서는 受刑者를 위한 현행직업훈련現況을 여러측면에서 考察하였다. 一般的으로 수형자의 직업훈련의 목표는 수형자의 社會復歸 또는 社會의 再統合에 두면서 그 결과로 再犯防止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육주의의 趨勢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職業訓練의 1차적 목표를 矯導作業에 수형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두고 있으며 겸하여 出所後의 재범방지의 효과를 期待하는 것으로 관계 법률이나 수형자 직업훈련의 目的에서 規定하고 있다. 환언하면 教育刑主義下에서의 직업훈련의 本質的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在所期間중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의 境遇에는 받지 아니한

수형자에 비하여 再犯率이 훨씬 낮다는 국내외적 실증적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就業된 출소자들이 그 직장에서 定着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事例가 빈번하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原因을 국내외 자료와 연구결과에서 紛明해 보면 직업훈련과정에서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강한 動機를 가지게 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發見할 수 있었다. 때문에 직업훈련을 受刑者들의 사회복귀와 정착을 위한 有効한 교정도구로써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교도소내에서 實施하는 교화교육이나 직업훈련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科學的인 방법과 절차를 발전시켜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 있어서 수형자들이 出所後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適應하며 직장생활에 정착함으로써 自力更生하는데 필요로 하는 態度나 行動樣式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現行 직업훈련의 종류나 실시방법의 전과정에 있어서 보다 實證的 연구에 바탕을 둔 이론과 方法을 援用해야만 할 필요성을 현행 직업훈련의 實態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第三章에서는 선진국 특히 美國에 있어서 수형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수정시키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行動修正理論의 개념과 교정사업에의 응용가능성을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행동수정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人間의 行動은 타인과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교류관계를 통하여 배우게 되며 또한 修正된다는 전제에 立脚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수정이론에 입각하면 직업훈련을 수형자들의 行動變化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強化物로서 조직하고 실시될 때에 한해서 직업훈련의 本質的 矯正效果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때문에 第三章에서는 행동수정을 促進하는 절차와 각종 強化物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問題는 수형자 자신의 태도와 행동만을 修正시킴으로써 그들의 社會的 復歸와 定着이라는 교정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定着하게 될 地域社會에서 정상인과 다름없이 수용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수정된 수형자들의 행동이 持續的으로 강화되고 사회규범으로 內在化될 수 있다. 환연하면 교도소와 수형자와 지역사회와의 有機的인 관계 형성은 成功的인 교정사업의 필수적 要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第四章에서는 矯導所 外部 즉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속에서 수형자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矯正事業의 方法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은 二次大戰後 美國에서는 교정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受刑者들의 成功的인 사회복귀와 결과를 나타나는 再犯防止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음이 各種 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이 활발하게 舉論되고 있지는 않으나 第二章에서 본바와 같이 企業體에 의한 수형자직업훈련은 우리나라 교정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轉機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이에 앞서 美國의 중간처우소(Half-way House)의 개념과 유사한 생생보호회사업도 第五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제도적인側面에서 보완되고 사업내용

을 質的으로 확충한다면 出所者들의 사회복귀와 再統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개의 結論을 얻게 되었다.

① 수형자 직업훈련이 再犯防止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法務部의 통계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그들이 어느정도 社會生活에 適應하면서 가정과 지역사회에 재통합되고 있는지에 관한 實證的 統計는 없다. 그러나 출소후 취업된 뒤 그 직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에서 비추어 볼 때 직업훈련이 수형자들의 사회적 재통합에 필요로 하는 行動變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行動修正理論의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하에서 受刑者들에게 자극제로서 제시하는 技能士資格證取得, 가석방 및 취업보장이 수형자들의 행동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강화물(positive reinforcement)로서 機能하는 데에는 상당한 과정상의 갭(gap)이 있다. 즉 훈련과정에서 수형자들의 행동이 段階의 修정되며 강화되면 그 때마다 修正된 行動을 강화시키며 다음 단계의 행동수정에로 誘導해 갈 수 있는 단계별 강화물 또는 유인책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최종적 目標으로 動機를 부여해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상의 行動修正強化物이 생략된 채 최종단계의 목표만을 提示할 때에는 훈련과정에서의 수형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나 행동변화를 體系있게 強化할 수 있는 기회를喪失하게 된다.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은 뒤에 技能은 숙달되었을지 몰라도 反社會的인 行動에는 별다른 變化를 體驗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로 出所後 직장이탈이나 再犯을 범하게 된다고 하겠다.

③ 행동수정의 이론에서 볼 때 직업훈련이 効果의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대상자의 選拔이나 훈련과정에 있어서 수형자 個個人의 欲求를 바탕으로 하는 個別化된 교과과정이나 훈련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現行 우리나라의 훈련실시 상황을 보면 選拔過程에 있어서 개인적인 욕구나 필요사항은 고려되지 아니한 채 矯導所의 一方의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差出集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행 훈련방법으로서는 行動修正의 理論의 効果를 거둘 수 없다.

④ 교정사업의 궁극적인 目的이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受刑者들로 하여금 出所後의健全한 사회적 복귀와 再統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制度下에서는 수형자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될 地域社會와 긴밀한 접촉 또는 관계형성을 가질 수 있는 充分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出所와 더불어 本人 스스로 자기 운명을 開拓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서 출소자들의 社會適應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록 企業體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 출소 후 그 기업에 취업한 수형자들마저도 그 기업환경에 圓滿히 적응하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형자들이 출소전에 그 企業의 작업환경이나 職場雰圍氣 등에 접할 수 있는 機會를 充分히 가지지 못했거나 就業後 그들의 행동변화를 직장환경에서 계속 強化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 強化方法을 기업체에서 活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다. 즉 기업체에 의한 受刑者職業訓練이 그 所期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서

수형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과 그들의 適應上의 문제를 상담해주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社會事業家와 같은 專門的 행동수정실무자들의 지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⑤ 현재 更生保護會 산하의 9개 지부에 30개의 생생보호지소가 全國 교도소 所在地에 설치되어 第四章에서 본 바와 같은 機能은 하고 있으나 美國에서의 중간처우소와 같은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설치된 지소들이 교도소 소재지라는 點에서 그리고 都心地로부터 외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중간처우소와 같은 사회재통합을 위한 시설로써 적절한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의 任意的 保護申請에 따라 보호를 주는데 있기 때문에 출소전에 社會的 再統合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중간처우소와는 상당한 差異를 發見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更生保護事業은 지역사회내교정사업의 개념으로 정립하기에는 상당한 制度的 또는 事業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⑥ 출소자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위해서는 國家機關이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내교정사업 뿐만 아니라 출소자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기관들의 적극적인 協助와 參與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現在로서 우리나라에서는 個人的 역량으로 출소자들을 도와주는 篤志家들은 있으나 수형자들을 돋고 있는 전문적 사회사업 기관이나 社會團體는 없다.

2. 수형자직업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提議

以上과 같은 結論에서 볼 때 현행 수형자직업훈련제도를 效果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補完되어져야 할 것이다.

① 교도소내외에서 수형자들에게 교화교육이나 직업훈련을 擔當하는 요원들에게 行動修正理論을 비롯한 행동과학의 기초이론과 응용방법을 익힐 수 있는 계속교육과 實務訓練이 요망된다. 아울러 교정 당국에서는 이러한 分野에서 교육훈련된 專門要員을 우선적으로 起用하는 제도적 規定을 마련하는 것도 요망된다.

②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政策的으로立案하고 實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적 目標達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質的인側面에서 受刑者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적재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훈련대상자의 選拔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劃一的인 方法과 節次는 가급적 폐하고個別化된 선정방법을 體系化하고 훈련과정에서 수형자들의 行動修正이 持續的으로 강화되어 갈 수 있는 誘引策을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③ 이번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受刑者들에 대한 教化教育이나 직업훈련은 교정기관 단독으로서는 사회복귀나 사회적 재통합과 같은 교정의 基本的 目標를 達成할 수는 없다. 때문에 미국의 사례에서도 본 바와 같은 교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地域社會內矯正事業의 概念과 方法을 우리도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전국적으로 擴大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更生保護會 산하의 일개 支所를 그러한 示範機關

으로 선정하여 實驗的으로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④ 企業體에 의한 受刑者 職業訓練은 교도소내의 교도작업을 위한 自體訓練보다는 효과면에서 우월 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내의 부족하고 불충분한 施設과 要員을 補完해 줄 수 있다는 점과 수형자들의 就業保障 또는 社會的 再統合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수 기업체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制度的支援(稅制惠澤, 施設費支援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안받은 출소자들의 社會適應과 就業斡旋 및 직장에서의 定着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s)를 민간사회사업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制度的 支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건사회부내에 출소자의 社會定着을 위한 行政機構를 설치함으로써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의 參與와 그들의 活動을 地域的으로 또는 機能的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앞의 ①번에서 提議한대로 總正事業에 종사할 수 있는 專門家の 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사업학과내에 이러한 분야에 적합한 教科過程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실습목적으로 교도소내의 職業訓練場이나 또는 更生保護會의 각 支所에 배치하여 實務訓練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전공학생들의 關心과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교정기관의 專門委員採用에 있어서 그들에게 우선적 機會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⑦ 끝으로 수형자들의 社會復歸와 社會的 再統合을 위한 教化教育이나 職業訓練 및 기타 總正事業의 實効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관한 專門的, 實驗的, 多學問的(interdisciplinary approach) 연구가 대학연구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공동으로 실시되어져야만 한다.

〈부록〉

출소자에 대한 조사설문지(Open-Structured Questionnaire)

1. 가족관계(부가시 부가가족상태와 친가가족상태를 전부 적어주세요)

본인파의 관계	동거여부	연령	직업	재산

(재산정도는 월평균생활비로 파악하되 곤란하면 집안에서 자신을 교육시키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상, 먹여 살릴정도만 되면 중, 그렇지도 못하면 하로표기)

- ## 2. 신상메모

성 별 남() 여()

나 이 ()세

학 력

- ### 3. 출소일(누범 경우 최종적으로 출소한 날)

년 월 일

4. 전과횟수는? ()번

- ### 5. 당신의 죄질은?

이때 당신이 생각하기에 범죄 동기는

- #### 6. 특수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7. 입소전에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입소전에 가졌던 모든 직업을 다 기입해 주십시오)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1. 직업훈련을 받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 2. 직업훈련을 받은 직종은 무엇입니까?

- ### 3. 왜 그 직종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4.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 직종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 있다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겼습니까? ()에서 ()로
 있다면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5.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직업훈련 분류나 훈련실시과정
 6. 자격시험이나 면허 취득시험 과정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7. 직업훈련을 받고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란에 ○표)
 면허() 기능사보() 2급기능사()
 8. 자격증(면허증) 취득한 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직종에 어떤 분야에 종사)
2. 주당 며칠간 일합니까?
 1) 7일() 2) 6일() 3) 격일제로() 4) 본인 마음대로()
3.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이것은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1) 100% 2) 80—70% 3) 70—50% 4) 50% 이하
4.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 6개월 미만 2) 1년 이하 3) 2년 이상 3년 이하
 4) 3년 이상 5) 5년 이상 6) 10년 이상
5. 현재의 직장을 어떻게 구하였습니까?
 1) ()의 소개 2) 본인 스스로
6. 현재 직업과 교도소내에서 받은 직업훈련이나 혹은 그 이전에 가졌던 직업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7. 출소후 열마만에 첫 직장을 구하였습니까?
8. 출소후 직장을 구했다가 바꾼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9. 바꾼 직종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취업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문제입니까?
11. 첫 직장에서의 대우는 어떠했습니까?
12. 현 직장에서의 문제점, 대우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1.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이것이 실제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2. 출소후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3. 첫 직장에서의 대우는 어땠습니까?
4.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5. 현재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측면 둘 다 답하여 주십시오)

본인 :

사회 :

기 타

1. 교도소내에서 가졌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부딪치는 현실과의 차이는 어땠습니까?
2. 교도소를 재소시 형받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까?
(그 정도에 따라 표시함)
3. 교도관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4. 취업한 후 재범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5. 초범이었을 때 취업한 경우와 재범이상이었을 때 취업한 경우에 있어 차이점이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직업훈련외에 출소후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교도소 생활중에서 교도관이 시키는 일을 하였을때 혹은 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8. 현재 생활에 만족합니까?
9.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10.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까?
11. 종교나 특기가 있습니까?

參 考 文 獻

1. 權仁鎬, 行刑史, 서울 : 國民書館, 1973
2. 權純永, 許柱旭, 行刑學, 서울 : 一潮閣, 1976
3. 金南星, 行動療法, 서울 : 배영사, 1975
4. 金沫謨 編, 現代社會問題論, 서울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1
5. 南興祐, 刑事政策, 서울 : 博英社, 1962.
6. 大檢察廳, 범죄분석.
7. 尹白南, 朝鮮刑政史, 서울 : 文藝書林, 1948.
8. 李星珍, 學校에서의 行動修正, 서울 : 培英社, 1972.
9. 이정잔, 現대 행형학, 서울 : 법조문화사, 1978.
10. 社會福祉法人, 社會福祉協議會, 한국사회복지총람, 1977.
11. 서울대학교 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法學, 제20권 2호[통권43호], 1980.
12. 崇田大學校 社會事業科, 社會事業研究(제 7집), 1982 : (제 3집), 1978,
13. 椎鎮揆, 刑事政策(I), (II), 서울 : 法文社, 1976.
14. 崔炳午, 青少年 非行의 原因에 關한 研究—사례연구를 中心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0.
15. 治刑協會, 韓國의 矯正行政, 1979.
16. 治刑協會, 矯正.
17. Becker, Howard S.(Ed), *Social Problems: A Modern Approach*, N. Y: John Wiley & Sons, Inc., 1966.
18. Brieland, Donald et.al, *Contemporary Social Work: an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N.Y:McGraws-Hill Book Co., 1980(1875)
19. Kassebaum, Geue, *Delinquency and Social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4.
20. Cole, William E.& Miller, Charles H., *Social Problems: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1965.
21. Cressey, Donald R. & McDermott, Robert A., *Diversion fro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Michigan: NAJC, 1973.
22. Davies, Martin, *Prisoners of Society: attitudes and after-ca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23. Dentler, Robert A., *Major American Social Problems*,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67
24. Duffee, David, *Correctional Management: Change and Control in correctional organiz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25. Glaser, Daniel, *Adult Crime and Social Policy*, Englewood Cliffs, N.T.: Prentice-Hall, Inc., 1972.
26. Glaser, Daniel(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4.
27. Gold, Harry, & Scarpitti, Frank R.(Ed), *Combatting Social Problems: techniques of intervention*, N.Y.: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7.
28. Haskell, Martin R., and Yablonsky, Lewis, *Criminology: Crime and Crimality*, 2n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8.

29. Hersey, Paul of Blanchard, Kenneth H.,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Utilize Human Resources*, 3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7.
30. Horton, Paul B., & Leslie, Gerald R.,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Meredith Publishing Company, 1965.
31. Haff, C. Ronald (ed), *Contemporary Corrections: Social Control and Conflic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7.
32. Hussey, Frederick A., & Duffee, David E., *Probation, Parole, and Community Field Services: Policy, Structure, and Process*, New York: Harper & Raw, Publishers, 1980.
33. Johnson, Elmer H., *Crime, Correction, and Society*, 4th Ed, Homewood, Ill.:The Dorsey Press, 1978.
34. Kazdin, Alan E., *Behavior Modification in Applied Settings*,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5.
35. Lerman, Paul, *Community Treatment And Social Control: a Critical Analysis of Juvenile Correctional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5.
36. Levin, Mark M., and Sarri, Rosemary C., *Juvenile Delinquency: A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Codes in the United States*, Michigan National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 1974.
37. MacMillan, Donald L., *Behavior Modification I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73.
38. McDonagh, Edward C., and Simpson, Jon E.(Ed), *Social Problems: Persistent Challenge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5.
39. Merton, Robert K., & Nisbet, Robert A. (Ed),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2nd Ed,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
40.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1977.
41. Payne, Malcolm, *Power,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Social Services: Social Work in Area Teams*, London:Macmillan Press Ltd., 1979.
42. Pollack, Paul C., *Juvenile Delinquency: Causes, effects & Remedies*, New York:Pageant Press, INC., 1955..
43. Raab, Earl & Selznick, Gertrude Jaeger, *Major Social Problems*, 2nd Ed, N.Y.: Harper & Row, Publishers, 1964(1950)
44. Ranulf. Svend, *Moral Indignation and the Middle Class Psychology: A Sociological Study*, Copenhagen: Levin of Munksgaard, 1938.
45. Redd, William H. et.al, *Behavior Modification: behavioral approaches to Human problems*, N.Y.: Random House, 1979.
46. Root, Lawrence, *Work Release Legislation*, Federal Probation 36 (Mark 1972)
47. Ross, H. Laurence, *Perspectives on the Social Order: Readings in Sociology*, N.Y.:McGraw Hill Book Company INC, 1963.
48. Rusche. George of Kirchheimer, Otto,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Russel and Sage, 1968.
49. Sarri, Rosemary, and Hasenfeld, Yeheskel(Ed), *Brought To Justice?: Juveniles, The Courts and The Law*, Michigan National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 1976.
50. Sarri, Rosemary C., *Under Lock and Key: Juvenile in Jails and Detention*, Michigan: National

-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 1974.
51. Sillis, David 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Y.: The Free Press, 1979.
 52. Smykla, John Ortiz, *Community-Based Corrections: Principles and Practices*, N.Y.: Macmillian Publishing Co., INC., 1981.
 53. Sutherland, Edwin H. & Cressey, Donald R.,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N.Y.: J. B. Lippincott Company, 1966.
 54. Tobias, J. J., *Crime and Industrial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A Pellican Book, 1967.
 55. United Nations, *Four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N.Y.: 1971.
 56. Vinter, Robert D.(Ed), *Time Out: A National Study of Juvenile Correctional Programs*, Michigan National Assessment of Juvenile Corrections, 1976.
 57. Wolfgang, Marvin E., Savit, Leonard, & Johnston, Norman, *The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N.Y.: John Wiley & Sons, INC., 1962.
 58. Znaniechi, F., *Social Actions*, Farror of Rinehart, 1936.
 59. Hartjen, Clayton A., *Crime and Criminalization*, N.Y.: Praeger Publishers, 1974.